

지적재산권 담보제도 활성화 방안 토론회

- ❖ 일 시 : 2006년 11월 17일(금) 오전 10:00 ~ 12:10
- ❖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
- ❖ 주 최 : 이종걸 의원실 · (사)한국지적재산권법제연구원

목 차

1. 진행순서	1
2. 개 회 사	2
3. 축 사	4
4. 주제발표	6
박 흰 일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7
5. 토 론	42
고 충 곤 (한국정보통신연구진흥원 IT지재권센터 센터장)	
권 대 열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김 기 용 (특허청 산업재산진흥팀 사무관)	
박 순 철 (산업은행 기술평가센터 센터장)	
박 지 환 (법무법인 다래 변호사)	
이 로 문 (한국지적재산권법제연구원 책임연구원)	
최 정 현 (기술보증기금 팀장, 법학박사)	

진행순서

- ❖ 개 회 ❖ [10:00 ~ 10:10]
- 개 회 사 : 이종걸 의원 (열린우리당) /
강영중 이사장(한국지적재산권법제연구원)
 - 축 사 : 서혜석 의원 (열린우리당)
- ❖ 발제 및 토론 ❖
- 좌 장 : 박영길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
 - 주제발표 : 박훤일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10:10 ~ 10:35]
 - 토 론 : 고충곤 (한국정보통신연구진흥원 IT지재권센터 센터장) [10:40 ~ 10:50]
권대열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10:50 ~ 11:00]
김기용 (특허청 산업재산진흥팀 사무관) [11:00 ~ 11:10]
박순철 (산업은행 기술평가센터 센터장) [11:10 ~ 11:20]
박지환 (법무법인 다래 변호사) [11:20 ~ 11:30]
이로문 (한국지적재산권법제연구원 책임연구원) [11:30 ~ 11:40]
최정현 (기술보증기금 팀장, 법학박사) [11:40 ~ 11:50]
- ❖ 질의응답 및 폐회 ❖ [11:50 ~ 12:10]



개 회 사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지적재산권 담보제도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최근 IT기술을 비롯한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특허기술 등의 지적재산이 산업의 핵심요소로 자리하고 있고, 국제사회가 지적재산 강국을 향해 선두 경쟁을 벌이고 있는 때를 즈음하여 이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종걸의원실과 (사)한국지적재산권법제연구원이 공동으로 토론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날 ‘지적재산이 돈이 된다.’ 는 사실을 모르는 이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수한 특허기술을 가지고 있더라도 자금지원이나 대출의 길은 쉽게 열리지 않고 있는 것이 또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자금력만 있으면 우수한 기술을 토대로 벤처기업을 창업하여 기술을 개발하고 제품을 만들어 수출을 통한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과 현행 법제는 이를 뒷받침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에는 일찍이 지적재산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가치평가를 통한 담보화 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법제 검토를 위하여 지적재산권 가치평가기법연구회를 설치하여 지적재산담보제도의 기준

과 문제점을 규명하기도 하고, 담보대출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하여 기술평가정보센터를 설립하는 등 이 분야의 제도개선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사회적 상황에서 지적재산권담보제도 활성화방안이라는 주제를 놓고 심도있는 토론을 통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일은 매우 뜻 깊은 일이라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가 단지 토론에 그치지 않고, 법제화할 수 있는 초석의 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토론회에 관심을 갖고 참석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06. 11. 17

국회의원 이 종 걸
(사)한국지적재산권법제연구원 이사장 강 영 중



축 사

안녕하십니까? 열린우리당 서혜석의원 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토론의 장을 마련해 주신 이종걸 의원님, 그리고 지적재산권 분야의 법제연구에 진력을 다하는 지적재산권법제연구원 임·직원 여러분께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금세기는 종래 제조업을 바탕으로 한 경제성장에서 탈피하여, 우수한 두뇌를 통하여 창출해 낸 지적재산을 산업의 동력으로 활용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간 지적재산 관련 법제는 지적재산재를 창출한 권리자의 보호에 주력해 오다 보니 사실상 지재권에 대한 이용과 산업에의 응용에는 그다지 성공하지 못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수한 지적재산재를 산업발전에 활용하지 못하는 데에는 이들 지적재산재에 대한 가치평가 및 평가된 재산재에 대하여 담보화 할 수 있는 길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한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

결국에는 개발된 기술이 재산재로서의 가치를 발휘할 때 기업의 입장에서 기술 개발 의욕도 생겨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재산재로서의 가치는 곧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될 것이며, 이는 다른 여타의 물건 등과 마찬가지로 담보능력을 인정해줄 때만이 가능하다고 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행 법제는 이 점에 대하여 매우 인색한 상황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토론회를 통하여 지적재산재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이들 지적재산재의 담보가치를 활성화 가능한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으면 하는 큰 기대를 가져 봅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에서 도출된 결과가 반드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미력이나마 힘을 보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 11. 17

국회의원 서혜석



주 제 발 표

박 환 일

경희대학교 법대 교수

은행의 지재권 담보대출 활성화방안

- 보다 안전하고 확실한 담보 범위의 확장 -

박 환 일

경희대학교 법대 부교수

I. 머리말

최근 은행들이 기업대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대기업의 투자가 저조한 까닭에 자금운용에 적잖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동안 위험가중치가 낮은 은행들이 선호하였던 주택담보대출¹⁾은 집값 상승을 우려한 금융감독당국의 규제 조치에 따라 크게 위축되었다. 그 대신 IMF 외환위기 직후에 경험했던 것처럼 부동산 경기가 하락할 때에는 부동산 담보대출이 대거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아 부동산 외에 확실하고 안전하면서도 간편하게 취급할 수 있는 새로운 담보수단을 모색 중이다.²⁾ 이에 따라 은행들은 담보가 될 만한 자산을 발굴하는 일에 부심하고 있다.³⁾

新BIS 협약(New Basel Accord)에 따라 위험관리에 더욱 힘써야 하는 은행들

- 1) 대부분의 은행들이 아파트 담보대출을 선호하는 것은 매매가 용이한 것도 있지만 BIS 위험가중치가 50%에 불과하여 여신증가 대비 위험자산(risk weighted assets)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 2) 오늘날 기업의 새로운 자금조달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은 ①재고자산 및 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 ②일정 자산에서 나오는 현금흐름(cash flow)에 착안하여 동 자산을 유동화하는 것, ③상당한 수익이 예상되는 프로젝트의 현금흐름으로부터 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하고 자금을 차입하는 것(project financing) 등이다. 일본의 기업법제연구회는 이러한 방식의 자금조달을 촉진하기 위한 법제도면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제도 개선안을 내놓았다. 日本 企業法制研究會(擔保制度研究會)報告書, 「不動産擔保から事業の収益性に着目した資金調達へ」, 經濟産業省, 2003.1. 박환일, “RFID를 활용한 금융기관의 담보관리방안”, 「금융법연구」, 2004.12.
- 3) 예컨대 우리은행은 2006년 7월 골프회원권을 담보로 한 대출을 개시하여 큰 인기를 끌었다. 골프회원권 담보대출은 골프장건설자금을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제공하는 경우 1석2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주차장운영권이나 어장조업권은 현금수입을 매출채권형식으로 양도하여 자산담보부증권(ABS)을 발행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해줄 수 있을 것이다. 저축은행 등에서 취급해온 골프회원권 담보대출을 시중은행들이 취급하는 것은 공익책임이 있는 대형은행들이 은행을 전담포화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파이낸셜 뉴스 2006.7.24자.

에게 신용대출을 요구할 수만은 없으며, 은행들이 안심하고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금융상품의 개발과 제도적 인프라의 확충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그 동안 취급상의 곤란으로 인하여 외면하였던 공장의 기계·기구, 재고자산을 담보로 활용하기 위한 여러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⁴⁾ 나아가 현재 부분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매출채권이나 지적재산권⁵⁾에 대하여도 그 담보가치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연구가 활기를 띠고 있다.⁶⁾

본고에서는 사업확장을 꾀하는 벤처중소기업을 상정하고 이 벤처기업이 어떻게 하면 보유자산을 가지고 은행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우선 특허 기술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는 것에서 시작하여 매출채권을 은행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 그리고 첨단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 IT)을 이용하여 기계·기구 및 재고자산을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지채권과 매출채권, 기업동산 등 세 가지 유형의 담보를 같은 맥락에서 고찰하는 것은 이들에 대하여 종전과는 다른 새로운 접근 방법이 필요하고, 모두 동일한 메커니즘에 의하여 담보권을 취득하고 관리, 실행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II. 지적재산권의 담보활용방안

1. 지채권의 담보활용

4) 남윤삼, “우리나라 동산담보제도의 개선방향(上) -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사법행정」, 1999.2.; 독일에서 한때 활발히 논의되었던 동산담보제도의 개선방안, 즉, 非占有動産擔保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미국 동산담보법과 비슷한 등록제도, 통일적 담보권을 도입하자는 학계의 주장을 소개한 논문으로는 양창수, “독일의 동산담보개혁논의 - 비점유동산담보제도를 중심으로”, 「법학」, 제44권 2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3.6 참조; 동산담보법제의 典範이랄 수 있는 UCC Article 9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는 박환일, “개정 美동산담보법의 국내 담보법제에 대한 시사점”, 「경희법학」 제37권 1호, 2002.12. 참조.

5) 특허청은 1998년부터 ‘지적(知的)재산권’ 대신 ‘지식(知識)재산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지적재산권은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의 일본식 표기이고, 21세기에는 ‘지식’이 모든 문화경제활동의 핵심 키워드로 등장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형태의 지식창작물을 포괄할 수 있다고 한다. 중국에서도 ‘知識產業權’이라고 일컫고 있다. 본고에서는 ‘지채권’으로 통칭하기로 한다.

6) 박환일, “전자채권등록제도와 국내 입법”, 「국제거래법연구」, 국제거래법학회 제15집 1호, 2006.7.; IT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특허기술 등을 담보로 활용하는 방안이 다각적으로 모색되고 있다. 한국소프트웨어감정연구회, 「S/W등 디지털정보재산권 가치평가 및 담보제도도입에 관한 연구」,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2002.11.; 현재 일본이 전자등기 방식으로 「동산 및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민법특례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대법원에서도 채권양도 및 동산담보 등기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일경제신문, “매출대여금채권 양도 쉬워진다”, 2006.8.2자.

오늘날 지식기반 경제(knowledge-based economy)에서 지재권의 자산가치가 증대되는 한편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도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新技術을 가진 벤처기업의 창업이 크게 늘어나고 있음에도 현실에서는 지재권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되지 못하여 담보로서 별로 이용되지 못하는 실정이다.⁷⁾ 이것은 담보 법제가 여전히 산업화시대(industrial age)에 머물러 있어 정보화시대(information age)의 주요 기업자산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⁸⁾ 정보화시대의 기업자산은 제품 및 공정을 중시하고 채권자의 위험부담⁹⁾을 줄여주는 산업화시대의 기업자산과는 그 종류나 내용이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¹⁰⁾

우리나라에서 실정법상으로 인정되는 지재권에는 특허권(patent), 실용신안권(utility model), 저작권(copyright), 상표권(trademark), 디자인권(design), 영업비밀(trade secret) 등이 있다. 이들 지재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일종의 權利質로서 등록원부¹¹⁾에 기재하고 채권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¹²⁾ 각각의 지재권법에는 質權설정 및 공시방법에 관한 규정을 두어 이들 지재권을 담

7) 박환일, “지적재산 금융소송”, 기술과 법 연구소 지적재산소송 세미나 자료집, 2005.8.29.; 미국변호사협회(ABA)에서도 일찍이 지재권의 담보화 방안을 연구하였다. 1992년 ABA는 “지재권의 담보제공을 규율하는 현행법이 聯邦法과 州法으로 나뉘어 복잡하고 불충분하기 때문에 담보권을 어디에 어떻게 등록(file)해야 하는지, 담보권의 공시(notice)는 어떻게 하는지, 담보권은 무슨 자산을 대상으로 하는지 불확실성(uncertainty)이 존재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Task Force on Security Interests in Intellectual Property, Business Law Section, American Bar Association, Preliminary Report 1 (June 1, 1992). 1999년에는 연방지적재산담보법(시안)(draft Federal Intellectual Property Security Act)을 발표하였다.

8) William J. Murphy, "Proposal for a Centralized and Integrated Registry for Security Interests in Intellectual Property", 41 IDEA 297-298 (*The Journal of Law and Technology* 2002).

9) 新經濟(New Economy)의 지재권, 특히 IT산업의 첨단기술은 진부화의 속도가 빨라 그 재산적 가치가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는 취약점을 안고 있다.

10) 미국의 경우 지재권의 담보제공은 연방법(Patent Act, Copyright Act, Lanham Trademark Act)에서 규율하는 반면 일반자산(주로 動産)의 담보제공은 州法인 통일상법전(UCC) 제9장(Secured Transactions)에 규정되어 있다. 그 결과 지재권을 담보로 하는 담보계약(security agreement)을 체결하는 것이나 對抗要件(perfection)을 갖추는 일에는 UCC보다 해당 연방법이 우선적으로 적용(preemptive)된다. 지재권에 관한 연방법은 권리자 중심으로 규율(title-based scheme)되고 있고 부동산과 비슷한 등록(recording) 방법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지재권에 대한 담보권 실행으로 권리자가 바뀌는 것에 관한 규정이 다소 불충분하다. Murphy, *op.cit.*, at 299.

11) 지재권은 등록원부에 기재함으로써 국가의 보호를 받게 되는데, 등록 이전부터 권리로서 인정되는 저작권이나 債權的 권리인 지재권의 通常實施權을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야만 공시방법 및 成立要件을 구비하게 된다. 그러나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서 등록은 당해 저작권 등을 제3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對抗要件에 불과하다(저작권법 제52조,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6조).

12) 도서출판 한길사는 2002년 8월 「로마인이야기」의 국내 번역·출판권을 담보로 국민은행으로부터 20억원의 대출을 받았다. 한길사가 1995년부터 발행하여 2006년 총 15권으로 완간할 예정인 「로마인이야기」는 여러 차례 베스트셀러의 자리에 올랐으며 2002년까지 10권까지 2백만권 가량 발행되었다. 중앙일보 2002. 8. 28자.

보로 제공하고¹³⁾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특허법 제121~123조, 실용신안법 제42조, 상표법 제62~63조, 디자인보호법 제56~57조). 물론 경제적 가치가 있는 지재권은 다른 재산권과 마찬가지로 채권자에게 소유권을 신탁적으로 이전(fiduciary transfer of title)하는 방식으로 양도담보권을 설정할 수도 있다.¹⁴⁾

著作權의 경우 저작권법 제44조에 의하여 질권설정의 방법으로 담보로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질권설정은 저작권 자체뿐만 아니라 저작물 출판권(저작권법 제60조) 등의 부분적이고 개별적인 저작권을 객체로 하여서도 가능하다. 저작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설정은 權利質(민법 제345조)을 설정하는 방법에 따라 채권자를 질권자로 하고 채무자 또는 저작권자를 질권설정자로 하여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저작권법 제44, 52조). 별도의 등록이나 다른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당사자간의 합의만으로 성립한다. 그러나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을 등록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저작권등록부에 등록함으로써 對抗力을 갖출 수 있다(저작권법 제52조 2항).¹⁵⁾

디지털화된 정보의 著作權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이므로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빌릴 수 있다. 예컨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벤처기업이 경제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프로그램저작권을 취득하는 것만으로는 그간에 투자한 비용을 회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프로그램저작권을 담보로 하여 자금을 마련하여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비용이나 개발된 프로그램의 영업비용에 충당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저작권의 담보제도는 매우 중요한 프로그램 저작재산의 유통에 해당한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權利質(민법 제345조)을 설정하는 방법에 따라 세부적인 질권설정과 그 행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1, 26조). 이러한 질권설정은 ‘권리의 다발’로서의 프로그램 저작권뿐만 아니라 컴퓨터프로그램의 排他的 發行權(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6조)이나 프로그램 複製權(동법 제16조 3항) 등의 개별적인 프로그

13) 질권설정은 권리의 양도가 아니므로 질권설정자는 당해 지재권의 사용·수익·처분권한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14) 이 경우 프로그램 저작물을 양도, 대여, 사용허락하는 것은 달리 公示方法을 구분할 수 없으므로 프로그램저작권을 양도받은 양도담보권자에게 속한다.

15) 저작권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한 경우 프로그램著作權과 같이 질권설정행위에 特約이 없는 한 프로그램저작권자가 이를 행사한다는 규정(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1조)이 없어 문제가 된다. 그러나 저작권법 제44조에서 ‘저작물의 이용에 따라 저작재산권자가 받을 금전’이라는 문구로부터 저작권에 질권을 설정하였을지라도 저작권은 여전히 저작권자가 행사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질권자는 질권의 실행을 통해 우선변제를 받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므로 질권이 설정되어 있다 해도 그것이 저작권자의 처분권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고 저작권 역시 양도할 수 있다고 본다. 오병철, 「디지털정보계약법」, 법문사, 2005, 187면.

램 저작권을 객체로 하여서도 가능하다.¹⁶⁾

이러한 디지털 정보에 대한 質權은 물건에 대한 질권과는 달리 저작권자가 질권설정 후에도 프로그램저작권을 양도하거나 프로그램 저작물을 양도·대여 또는 사용허락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¹⁷⁾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1조 2항은 “프로그램저작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은 그 프로그램저작권의 양도, 프로그램의 양도 또는 대여나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락에 따라 프로그램저작권자가 받을 금전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민법 제342조의 物上代位에 관한 규정을 프로그램저작권의 양도에 대해서까지 적용한 것이다. 프로그램의 양도·대여 또는 사용허락에 따라 프로그램저작권자가 받을 대금 또는 수수료는 프로그램저작물의 ‘法定果實’에 해당하므로¹⁸⁾ 질권의 효력이 당연히 미치는 것이다. 민법상의 물상대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저작권자가 받을 금전 그 밖의 물건의 인도 전에 지급될 금전이나 물건을 압류하여야 한다.

지재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실행방법은 민사집행법에 정한 집행방법에 의한다(민사집행법 제233~251조). 즉, 法院이 정한 방법으로 지재권을 제3자에게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부터 질권자가 우선변제 받는 방법이 적용된다. 轉付命書이나 推尋命書은 오직 금전채권에 대해서만 가능한 실현방법이므로 지재권이 현금화되기 전에는 이를 신청할 수 없다.

2. 지재권의 담보제공을 위한 조건

지재권의 담보활용을 제고하기 위하여 새로운 담보제도를 고안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본질적으로 지재권은 進行型의 재산권으로서 이익실현이 불확실하고, 생애주기(life cycle)가 짧은 데다 채권회수의 방법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업이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지재권은 우선 표시된 대로 존재하여야 하며, 登錄이 되어 있는 등 법적으로도 유효하게 보호를 받는 것이라야 한다.¹⁹⁾ 아울러

16) 상계서, 168~169면.

17) 상계서, 139면.

18) 상계서, 174면.

19) 문제가 되는 것은 지재권으로 등록할 수 없는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같은 것이다. 이것은 M&A 등을 통해 純有形자산의 평가액(net tangible worth) 이상으로 기업가치가 평가될 때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이지만, 비밀

지재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제품이나 기술을 대상으로 하는 지재권은 그 가치를 이용하여 신속히 외부자금을 조달해야 하므로 담보권 설정 및 실행절차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지재권은 권리 중심으로 보호받게 되므로 지재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이를 믿고 출자하거나 대출해주는 투자자의 위험도 감소시켜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재권의 보유자와 담보권자가 누구인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중앙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지재권담보 등록제도(centralized and integrated registry)가 필수적이라 하겠다.²⁰⁾

이러한 지재권을 가진 기업에 대한 유력한, 때로는 유일한 자금조달원은 벤처캐피털 또는 코스닥 시장인 경우가 많으며, 벤처기업은 종종 지재권을 담보로 하는 자금조달을 모색하게 된다. 지재권은 제3자에게 사용료를 받고 빌려주는 방식으로, 즉 제3자에게 사용을 허락(license)함으로써 그 가치를 활용할 수도 있다. 지재권의 재산적 가치를 보고 출자 또는 대출을 하는 경우에는 유통시장(secondary market)에서 투자분의 회수가 원활해야 후속투자도 활기를 띠게 될 것이다.²¹⁾

투자의 전제조건으로서 지재권의 소유관계 및 담보권의 설정(creation) 및 履歷추적(tracking)이 유효하고 정확해야 한다. 지재권에 대한 정보가 불완전하다거나 부정확한 가치평가가 이루어진다면 투자자들의 위험이 그만큼 증가하기 때문이다. 지재권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평가의 기초로 삼을 만한 역사적인 기록(historic record)이나 재무적인 정보(financial information)가 없다는 점이다. 당해 지재권이 시장에서 어떠한 반응을 얻을지, 소비자들의 태도가 어떠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사항들이다. 그리고 벤처기업의 핵심기술은 비공개 정보가 대부분이어서 투자자들은 접근하기가 어렵고, 벤처기업 경영자의 경영능력, 사업에 대한 열정도 일반투자자들로서는 알 수 없는 것들이다.

그 결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는 사업이 발전하면서 관련정보가 증가함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²²⁾ 초기에는 부족한 정보를 감수하는 모험

유지약정(confidentiality agreement)에 의해서도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20) Murphy, *op.cit.*, at 303.

21) 유통시장의 부재로 투자분을 장기간 회수할 수 없거나 마땅한 후속 투자자를 찾는데 적잖은 비용이 든다면 이러한 투자는 비유동적(less liquid)이어서 덜 매력적(less attractive)이고 가치도 떨어지게(less valuable) 될 것이다. Id. at 305.

적인 투자가 행해지더라도 뒤로 갈수록 지재권을 비롯하여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코스닥 등 제도권의 체계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게 된다.

3. 지재권의 擔保價値 평가

지재권을 담보로 제공할 때 가장 큰 難點은 현실적으로 그 가치를 평가하기가 어렵고, 存續기업(ongoing business)이나 清算기업(liquidating business)이냐에 따라 지재권의 가치가 크게 차이가 난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지재권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이유는 지적재산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과 이를 대체(replacement)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재권의 경우 이것을 최고로 잘 활용(the highest and best usage)하였을 때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가 하는 시장잠재력(market potential)이 보다 중요하다.²³⁾ 그러나 회사를 청산하는 마당에 그 경영활동에 쓰였던 지재권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없음은 불가피할 것이다.

통상 금융기관이 지재권의 담보가치를 평가(appropriate valuation)할 때에는 당해 지적재산이 ① 새로 취득하는 데 얼마나 비용이 드는가(cost approach), ② 시장에서 얼마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가(market approach), ③ 얼마나 수입을 올릴 수 있는가(income approach) 하는 방식으로 측정하게 된다. 費用접근법은 이를 새로 재생산하거나 대체할 때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측정하여 평가하는 것이고, 市場접근법은 자유로운 공개시장에서 그와 유사한 자산의 거래정보를 종합 비교하여 가치를 가늠하는 것이다. 반면 收益접근법은 당해 자산과 관련된 경제적 수입(economic income)을 기준으로 한다. 즉 대상자산으로부터 생애주기 동안 예상되는 기대수익을 예측하고 이를 現在價値化하는 것이다.

이상 세 가지 평가방법은 주안점이 달라 그 결과도 각기 다르게 마련이므로 적

22) 신기술을 가진 벤처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를 상정할 때 대부분 借入보다는 出資(equity financing)를 통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신기술이 사업성이 있다고 인정받으면 엔젤투자자 등으로부터 창업(start-up)을 위한 種子돈 투자지원(seed financing)을 받게 되고, 제품개발을 마치고 초기 마케팅에 들어가는 단계에서는 벤처캐피털 등으로부터 創業자금조달(start-up financing), 신기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 벤처캐피털 등이 참여하는 初期자금조달(early stage financing), 순익분기점에 도달하여 사업부문을 확장하거나 기업공개(IPO)를 추진할 때에는 기관투자가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後期자금조달(later stage financing)을 하게 된다.

23) Lee G. Meyer, Bruce H. White and William L. Medford, "Intellectual Property in Today's Financing Market", 19-MAR Am. Bankr. Inst. J. 20.

절한 환경(appropriate circumstances)에서 적절한 가치(appropriate value)를 평가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appropriate method)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²⁴⁾

구체적으로 지재권의 가치를 평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란 지재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 창업을 할 때 당해 지재권을 일정 금액의 출자로 평가받는 경우, 지재권을 일정 대가를 받고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등이 있다. 그러나 지재권 등의 기술거래가 성사된 사례가 많지 않은 데다 기술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담보평가에 관한 사항을 영업상의 비밀로 분류하고 있어 사례를 조사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지재권의 대가, 지재권을 담보로 한 대출금을 지불하는 입장에서는 과연 당해 지재권이 기대한 수익을 발생할 수 있는가, 원리금 상환재원을 창출할 수 있는가 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²⁵⁾

방법론으로서 이상의 것과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checklist)하는 평가기법으로 <표 1>와 같은 項目別 평가방법이 있다. 예컨대 어느 벤처사업가가 특허 받은 기술을 담보로 제공하고 융자를 신청한다고 하자. 은행의 여신심사부서에서는 특허권의 권리적 측면(기술의 권리 형태의 상태 평가, 권리의 경쟁적인 부분 평가), 경제적 측면(기술의 활용과 사업적인 성과 시장성 평가), 환경적 측면(기술 관련 제반 환경적 요소 평가)을 평가한 다음 1차 평가와 조정을 통하여 최종 평가를 내리게 된다. 그리하여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희망금액을 대출해주고, 그에 못 미치면 금액을 줄이거나 대출을 거부하게 될 것이다.

24) 비용접근법은 향후 기대수익에 대한 고려가 없고 시장구조적 요인을 반영할 수 없으며 기대수익의 획득에 수반되는 위험을 감안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시장접근법은 유사한 지재권 거래의 빈도가 낮고 관련정보가 부족한 경우에는 효용성이 떨어진다. 아예 지적재산의 비교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 수익접근법은 미래의 현금흐름에 관한 크기와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고 미래의 불확실성과 위험요소를 산정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활동기준 회계법(activity based costing method), 재작성비용 계산법(re-creation cost method), 현금흐름할인법(discounted cash flow method), 기술요소법(technology factor method), 옵션가치 평가방식(contingent valuation method) 등이 제안되고 있다. 한국소프트웨어감정 연구회, 전계보고서, 16~35면 참조.

25) 2002년부터 기술가치평가 모델의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한국기술거래소에서는 그동안 축적해 온 사례에 각종 평가방법론을 적용하여 그 타당성을 비교 평가하고 있다. 비용접근법은 기술개발비용이 기술가치와 무관하여 공정 시장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고, 시장접근법은 사례수집에 한계가 있는 데다 평가 및 적용방법에 대한 충분한 경험과 연구분석을 필요로 한다. 이에 따라 수익접근법이 실무적으로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는데, 평가변수를 추정할 때 평가자의 주관에 의존하는 문제가 있어 추정변수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한다. 임창만, “기술가치평가 실무지침개발사업 소개”, 한국기술거래소 <<http://www.kttc.or.kr>>의 “문서자료실” 참조.

[표-1] 기술가치 평가항목 및 배점 사례

평가항목		배점	1차평가	조정	최종평가
기술의 권리적 측면	기술의 권리형태	5	3		3
	기술의 완성도, 신뢰도	5	3		3
	대체·유사기술의 존재성	5	3	-2	1
	기술의 모방 난이도, 가능성	5	1		1
	기술의 수준	5	3		3
	기술의 생애주기상의 위치, 수명시간	5	1		1
	권리의 예상 수명	5	3	-1	2
	기술의 상업화	5	2		2
	소 계	40	19	-3	16
기술의 경제적 측면	기술의 제품 기여도	10	7	-2	5
	기술제품의 시장성, 성장성	5	4	-3	1
	제품의 가격, 비가격 경쟁력	5	3	-2	1
	타 기술·제품과의 응용가능성	5	3	-1	2
	제품의 수익성, 전망	5	3	-1	2
	소 계	30	20	-9	11
기술의 환경적 측면	신기술의 출현속도	5	3	-1	2
	기술기업화의 여건	10	5		5
	경쟁기술의 환경	5	3	-1	2
	기술 인프라 규제 등	5	3	-2	1
	해당 산업의 성장여건	5	3	-1	2
	소 계	30	17	-5	12
총 점	100점	56점	-17	39점	

자료 : 한국소프트웨어감정연구회, 「S/W등 디지털정보재산권 가치평가 및 담보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프로그램 심의조정위원회 연구보고서 2002-20.

4. 디지털정보재산권의 평가방법

정보화시대의 지재권의 총아는 디지털정보재산권이라 할 수 있다.²⁶⁾ 디지털정

26) 실정법상으로는 정보화촉진기본법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보'의 개념을 규정한 것 외에는 '디지털정보'라는 용어는 사용되지 않고 있다. '라이선스'를 '사용허락'이라고 하는 등 법률 용어에 외래어의 사용을 기피하는 경향은 있지만, 이미 '디지털콘텐츠'라는 용어가 일반화되어 있으므로 '전자정보'보다는 '디지털정보'라고 하는 것이 일상적인 용례에 더 부합한다고 생각된다. 미국의 통일컴퓨터정보

보재산권이란 디지털정보²⁷⁾에 부여되는 재산상의 권리를 말한다. 같은 지재권이더라도 디지털정보재산권은 일반 저작물과 컴퓨터프로그램의 차이에서 엿볼 수 있듯이 특별한 취급을 요한다. 디지털정보는 누구나 그 결과를 출력하거나 디스플레이에 표시함으로써 또는 인터넷 환경에서 그 내용을 쉽게 알 수 있고 나름대로 평가할 수도 있다.²⁸⁾

디지털정보는 복제를 하는 데 限界費用(marginal cost)이 거의 들지 않고 무한복제(limitless reproduction)가 가능하므로 디지털정보의 경우 원본의 희소성(scarcity of original)이 자칫 훼손될 수 있다. 디지털정보를 끊임없이 업그레이드함으로써 복제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 上策이다. 또한 디지털정보는 유선 또는 무선으로 전송될 수 있으므로 國境의 구분이 무의미하고, 이용자 또는 소비자의 호응에 따라 需要가 무한대로 늘어날 수 있는 반면 라이프사이클은 짧아지게 되었다. 이러한 디지털정보의 속성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없으면 지재권으로서의 가치가 크게 떨어진다.

이러한 디지털정보재산권²⁹⁾은 디지털정보에 부여되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그 기초가 되는 계약의 종류에 따라 내용 및 가치가 달라진다.³⁰⁾ 다만, 디지털정보계약은 디지털정보 그 자체를 객체로 하는 계약을 말하므로 디지털정보에 권리가 인정되는지, 어느 정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지와는 관계없다. 설령 저작권이나 특허권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 이른바 프리웨어(freeware)나 오픈소스(open source) 프로그램, 또는 데이터베이스로서 법적 보호(저작권법 제73조의3)를 받지 못하는 디지털정보라 할지라도 그 자체의 계약은 가능하다.

디지털정보 개발계약은 타인에게 디지털정보의 개발 및 제작을 의뢰하는 계약으로서 주문형(on-demand) 디지털정보를 거래할 때 많이 이용된다. 이 경우 계

거래법(Uniform Computer Information Transaction Act: UCITA)에서는 ‘컴퓨터정보’(computer information)라고 하는데(UCITA 제102조 a항 10호), 거래의 객체인 정보가 소프트웨어에 관한 것이므로 하드웨어를 뜻하는 ‘컴퓨터’라는 수식어보다는 소프트웨어의 성질을 표현하는 ‘디지털’이라는 수식어가 더 적절할 것 같다. 오병철, 전제서, 8면.

27) 디지털정보란 ‘디지털 형태로 되어 있는 정보’(information in digital form)를 말하며, 부호·문자·음성·영상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이 光 또는 전자적·자기적 방식으로 처리된 것을 망라한다.

28) 播磨良承 編著, 「情報化社會における知的所有權 II」, ぎょうせい, 1990, 221면; 박원일, “지적재산 금융소송”.

29) UCITA에서는 ‘정보재산권’(information property right)이라 하여 ‘특허권, 저작권, 마스크워크(mask-work), 영업비밀, 상표권, 퍼블리시티권(publicity right)을 다루는 . . . 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라고 정의하고 있다(제102조 a항 38호).

30) 오병철, 192~194면.

약의뢰자가 개발자와 디지털정보의 개발 및 제작과 디지털정보권의 귀속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주문자에 의한 자금지원만이 가능할 것이다.

디지털정보 사용허락계약은 예컨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17조, 저작권법 제42조에서 각각 라이선스에 관한 규정이 있다. 라이선스 수수료의 현금흐름이 안정적인 경우 이를 기초로 하는 자금조달(asset-backed loan)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정보 대여(lease) 계약의 경우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간접적으로 배포권 행사의 하나로 인정하고 프로그램의 대여를 디지털정보 유통의 한 방법으로 인정하고 있다(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8조 2항, 제19조 2항, 제21조 2항). 디지털콘텐츠에 적용되는 저작권법에서도 대여를 배포권 행사의 하나로 인정한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프로그램 매수인(end-user)의 최초판매의 원칙(first sale doctrine)에 따른 배포(distribution)행위로서 영리 목적의 대여행위가 원칙적으로 제한되는 반면, 디지털콘텐츠의 경우에는 그러한 최초판매의 원칙에 대한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는 디지털콘텐츠의 대여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디지털정보 최종사용계약은 디지털정보의 최종사용자(end-user)와의 사이에 이루어지는 계약을 말한다. 그밖에 이미 제공한 디지털정보의 오류를 수정하거나 기능적인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주는 디지털정보 유지보수계약과, 디지털정보를 사용하는 동안 기능의 사용법에 대해 지원을 하는 디지털정보 사용지원계약이 있다. 예컨대 컴퓨터프로그램의 경우 지속적으로 버그를 수정하는 패치(patch)나 성능개선 패치(upgrade patch)를 만들어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디지털콘텐츠의 경우에는 새로운 정보를 삽입한 업데이트 버전(update version)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 경우 디지털정보의 수정이나 사용지원이 디지털정보 사용허락계약이나 최종사용계약의 일부로 규율되는 경우가 많지만, 별도의 계약이 체결된다면 이는 디지털정보계약에 해당한다. 대부분 디지털정보 사용허락계약이나 최종사용계약에 부수적인 종된 계약으로 체결되고 있다.

디지털정보는 지식기반 경제에서 필수불가결한 지적재산임에도 그의 개발 및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과 그로부터 기대되는 수익이 크게 다르고 지재권이 유통되는 시장이 없거나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 가치를 평가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공신력 있는 데이터베이스 관리기구와 뒤에 말하는 소프트웨어 임치제도와 통합하여 e-마켓플레이스로 운영하여도 좋을 것이다.

지재권의 종류와 성상에 따라 가치평가방법을 달리 해야 한다는 것은 다음의

사례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현재 그 브랜드 가치가 코카콜라에 이어 세계 2위로 평가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³¹⁾의 경우 1980년대 초 개인용 컴퓨터 운영체제(PC DOS)를 개발할 당시만 하여도 오늘날과 같은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할 줄은 아무도 몰랐다. 그저 PC를 쉽게 다룰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젊은이들의 벤처기업으로 인식하는 수준이었다. 그 때 마이크로소프트 상표(trademark)의 가치는 시장에 비교대상이 없는 운영체제의 시장가격도 아니고, 객관성을 보장할 수 없는 개발비용도 아니고 오직 MS DOS를 탑재하는 PC의 수로 측정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 수익을 논리적으로 확장(logical extension)하더라도 DOS 응용 소프트웨어의 제작 및 판매수입 정도이지 그 후에 개발된 윈도 운영체제(Windows OS)까지 계상한다는 것은 투기적인 평가(speculative extension)에 속하는 일이기 때문이다.³²⁾

디지털정보의 대표격인 소프트웨어를 보면 소프트웨어의 유형에 따라 각기 다른 평가의 특성을 갖는다. 앞에서 설명한 지재권 가치평가방법 - 비용접근법, 수익접근법, 시장접근법 - 을 적용할 때 소프트웨어의 유형에 따라 평가방법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소프트웨어에 따라 현금흐름을 발생시키는 課金정책(pricing policy)이나 라이선스 방식이 다르고, 소프트웨어 시장규모와 개발비용,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서로 달라지기 때문이다.³³⁾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표 2>는 평가대상인 지재권에 따라 적절한 가치평가 방법을 제시한 것이다. 즉, 특허 및 기술, 상표권, 저작권, 제품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평가는 수익접근법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이러한 종류의 지재권은 수익을 창출하지 않는 한 객관적인 가치를 평가하기 어렵고, 무형자산인 지재권의 특성상 유사한 시장거래 사례를 비교하기 어려워 시장접근법은 이용도가 크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들 지재권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을 산정하는 것은 그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한 무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31) 브랜드 컨설팅전문 인터브랜드(Interbrand)와 미 경제주간지 비즈니스위크(Business Week)가 조사한 2006년 세계 100대 브랜드에서 마이크로소프트(MS)는 569억 달러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MS는 670억 달러의 코카콜라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하였으며, 한국 삼성전자의 브랜드 가치는 162억 달러로 2005년에 이어 세계 20위를 유지하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2006.7.28자.

32) Jacquelyn Dal Santo, "Intellectual Property Income Projections: Approaches and Methods", Robert F. Reilly and Robert P. Schweih (ed.), *The Handbook of Business Valuation and Intellectual Property Analysis*, McGraw-Hill, 2004, p.356.

33) 소프트웨어의 종류에 따라 현금흐름이 달라지는 것은 일반 상업용 소프트웨어, 웨어웨어, 프리웨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표-2>에 의하면 소프트웨어를 경영정보 소프트웨어와 제품 소프트웨어로 나누어 전혀 상반된 평가방법을 권장하고 있다. 우선 ‘경영정보 소프트웨어’란 주로 기업체나 기관 등에서 일반 데이터 처리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를 말하는데, 사용자 또는 발주자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특별하게 개발된 ‘맞춤형’ 소프트웨어이다.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컨설팅→요구분석→시스템설계→개발 등의 절차로 이루어지므로 당해 발주자에게 제한적인 가치특성을 지니게 된다. 그러므로 해당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해 각각의 전문 프로그래머가 얼마만큼의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는지의 관점에서 비용접근법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이다.³⁴⁾ 시장접근법을 차선책이라고 한 것은 같은 기능을 가지거나 유사한 특성을 보유한 소프트웨어의 시장거래정보가 있어야 이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유사 소프트웨어를 당해 기업의 컴퓨터에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를 포함한 각종 비용도 계상하여야 한다. 경영정보 소프트웨어의 평가에 수익접근법을 활용하려면 당해 소프트웨어에 특별한 경제적 이익이 직접 연결되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

[표-2] 지재권별로 권장되는 가치평가방법

지재권별	우선적용	次 善	취 약
특허 및 기술	수익접근법	시장접근법	비용접근법
상표 및 브랜드	수익접근법	시장접근법	비용접근법
저작권	수익접근법	시장접근법	비용접근법
작업팀 (assembled work force)	비용접근법	수익접근법	시장접근법
경영정보 소프트웨어	비용접근법	시장접근법	수익접근법
제품 소프트웨어	수익접근법	시장접근법	비용접근법
유통망	비용접근법	수익접근법	시장접근법
총판권 (franchise rights)	수익접근법	시장접근법	비용접근법

자료 : 한국소프트웨어감정연구회, 「S/W등 디지털정보재산권 가치평가 및 담보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2002, 73면.

34) 정보통신부장관이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관 등이 조달하는 소프트웨어의 대가를 산정하는 기준을 정한 「소프트웨어사업대가의 기준」(정보통신부 고시 제2004-8호) 역시 비용접근법에 입각해 있다. 동 기준에 의하면 소프트웨어 개발비는 개발규모에 의하여 산정할 경우에는 데이터 또는 트랜잭션의 기능점수, 코드 라인數 방식에 따라 개발원가직접경비·이윤의 합으로 산정하든가, 아니면 투입인력의 수와 기간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후자의 경우 소프트웨어기술자 등급별 노임단가에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을 준용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제품 소프트웨어’란 일정한 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일반 사용자를 대상으로 제작되어 제품으로 출시된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소프트웨어가 이에 해당한다. 제품 소프트웨어의 가치평가에 있어서는 비용접근법을 적용하기가 매우 어려운데 이는 제품의 상업화에 따른 이익, 투자위험의 정도, 이익증대의 가능성 등 內在價値의 평가에 중요한 요소를 반영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품 소프트웨어의 경우 성장성, 투자위험성 등을 고려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수익접근법이 가장 적절한 평가방법이라 할 수 있다.³⁵⁾

소프트웨어는 한계비용의 체증 없이 무한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개발비와 가격·사용료가 크게 다르다. 소프트웨어의 가치평가는 해당 소프트웨어의 시장 점유율과 시장 크기에 비례한다고 볼 수 있다. 이때 소프트웨어의 활용영역이 특수할수록 시장 가격은 높게 책정되지만 시장의 크기는 반비례한다는 특징이 있다.³⁶⁾ 이는 소프트웨어의 유형에 따라 소프트웨어의 가치평가 척도가 달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시장성이 큰 소프트웨어의 경우 개발비용보다는 시장접근법, 수익접근법과 같은 평가 모델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반면, 시장이 특수할수록 비용접근법, 기술요소법과 같은 평가 모델이 적합할 것이다.³⁷⁾

요컨대 소프트웨어의 가치평가는 소프트웨어의 유형별 평가특성을 고려하여 평가기법을 적용하는 것이 좋다.³⁸⁾ 아울러 비용, 수익성, 시장사례 등으로 표시되는 경제적 가치와 기술요소들로 표현되는 기술적 가치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여러 요소 중 어느 하나에 중점을 두어 소프트웨어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객관적이고 정확한 가치를 측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신뢰성 있는 가치평가를 위해서는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확보되어 있는 환경에서 비용, 수익성, 시장사례 등의 경제적인 가치측정 요소를 모두 활용하여 평가한 후, 기술적인 요소들을 항목별로 평가하여 대비·보완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만일 뒤에서 제안하는 대로 基金이 조성되어 지재권 또는 디지털정보재산권이 경매시장에 나왔을 때 이를 인수하고 유통·판매를 지원해줄 수 있다면 지재권의

35) (주)테크밸류, ‘지적자산과 무형자산의 가치평가’, 세창출판사, 2000.

36) 예컨대 일반 사무용 프로그램이나 윈도우 운영체제는 기만원 내외이지만, 과학용·계측용·산업용 소프트웨어는 수백~수천만원을 호가한다.

37) 한국소프트웨어감정연구회, 전계 보고서, 83면.

38) 소프트웨어를 담보로 취득할 때에는 앞에서 설명한 지재권 가치평가방법에 의하여 어느 정도 확실한 재산적 가치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소프트웨어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채무기업 경영진의 경영능력과 자세가 중요하므로 경영진에 대한 면담 및 평가를 실시하도록 한다.

담보화가 훨씬 촉진될 것이다. 지적권의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감정·평가를 돕고 이를 마케팅에 활용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시장이 열리게 될 것이다.

5. 지적권 로열티의 유동화

소프트웨어의 로열티 수입이 상당 기간 안정적으로 발생한다면³⁹⁾ 전통적인 담보제공이 아니라 특수목적기구(SPV)에 대해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말하자면 현금흐름이 발생하는 원천(source)인 지적권을 통째로 담보로 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셈이다. 이와 같이 자산유동화(ABS)를 실행하는 경우 현금흐름이 동질적인 지적권 자산을 집합(pooling)하여 적정 규모로 만든 후⁴⁰⁾ 여기서 나오는 현금흐름을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로열티 채권을 유동화하는 것은 그 내용을 소수의 투자자만이 이해할 수 있으므로 지명도가 높은 기술을 제외하고는 공모 발행이 어렵고 통상私募로 발행되고 있다.⁴¹⁾

디지털정보재산권을 비롯한 지적권의 담보 활용을 촉진하려면 거래시장을 확대하고 투자자들의 기대에 부합하는 수익성과 안전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 투자자들을 자본시장에서 발굴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지적권에서 나오는 현금흐름을 가지고 원리금을 상환하는 것 외에 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면 지적권의 담보성이 획기적으로 제고되고, 소프트웨어를 거래하는 유통시장도 활발해질 것

39) 지적권 로열티를 증권화하는 것은 일반 자산을 유동화하는 것과는 여러 모로 다르므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 지적권에서 나오는 현금흐름이 오랜 기간에 걸쳐 안정적이고 과거 실적(track records)에 비추어 장래의 현금흐름을 확실성을 갖고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오직 성공한 기술만이 유동화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적어도 발표 후 5년 이상은 되어야 유동화가 가능할 것이다. ② 현금흐름이 비슷한 다른 자산과 풀링(pooling)을 하더라도 로열티 수입 자체가 상당 규모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거래은행에 자산담보부 대출(asset-backed loan)을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산보유자가 당해 지적권에 대하여 국내 및 국제적으로 권리를 확실히 보유하여야 한다. ③ 지적권을 이용하는 라이선시(licensee)의 신용도가 좋아야 한다. 예컨대 특허권 실시권자가 매출규모가 상당한 유수의 기업이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좋은 신용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진정한 양도(true sale)의 요건을 갖추고, 유동성 충당금(reserve fund)의 적립, 초과 로열티의 풀링, L/C보험 등의 신용보강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40) 자산유동화(ABS)에 있어서 대상자산을 적정 규모로 집적해야 하는 것은 이를 구조화(structuring)하고 자본 시장에서 판매하는 과정에서 증권회사, 신용보강기관(credit enhancer), 신용평가회사, 자산관리자(servicer), 수탁회사(trustee),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많은 사람들이 관여하여 비용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적정 규모에 이르지 못하면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현금흐름이 나오는 자산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asset-backed loan)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41) 박원일, “영화제작 투자와 법률”, 「지적재산권법연구」 제6집, 한국지적재산권학회, 2002, 75~83면.

이다. 유통시장이 형성되어야 담보권의 실행 내지 가치평가가 원활해질 수 있으므로 지재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가치평가, 거래의 중개를 수행하고 나중에는 인수해줄 수도 있는 거래소가 필요한 것이다.

또한 소프트웨어 이용자의 보호와 소프트웨어의 사장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의 소프트웨어 條件附任置(escrow)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는 저작권자가 폐업·자연재해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소프트웨어를 거래하는 저작권자와 사용권자가 합의하여 소스 프로그램 및 기술정보 등을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에 임치해 두고, 예상하였던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소스 프로그램 등을 사용권자에게 공개하는 제도이다.⁴²⁾ 이러한 임치제도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는데, 프로그램저작권을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에 조건부로 임치하고 이를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다. 이 경우 투자자는 수치인의 도움을 받아 실시권을 행사함으로써 투자자금을 회수하게 된다.⁴³⁾

이와 함께 프로그램저작권자의 권리구제가 강화되어 지재권 침해를 방지하고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면 프로그램저작권의 담보성이 향상될 수 있다. 지재권 중에서도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정보재산권은 경제적 비중이 날로 증대되고 있으므로 국가적으로 지재권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채권자들이 안심하고 소프트웨어를 담보로 취득할 수 있도록 공인된 소프트웨어 거래소나 에스크로 제도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디지털정보재산권의 등록은 물론 담보권 등 권리의 조회를 인터넷을 통하여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III. 채권양도의登記

1. 매출채권을 이용한 자금조달방안

오늘날 기업이 물품의 매매·대여, 용역의 제공 등으로 상대방에 대하여 대금청구권(account receivables: 이하 “매출채권”이라 함)을 취득하였을 때 그 변제기 도래 전이더라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① 제3자에게 양

42) 임치의 대상은 소스 프로그램 및 오브젝트코드의 복제물, 설계서, 사양서, 플로차트, 매뉴얼, 유지보수 자료, 개발기술자 정보 등이다.

43) 한국소프트웨어감정연구회, 전계 보고서, 106면.

도(outright assignment)하고 대가를 지급받거나 기존 채무를 면제받는 것, ② 할인(discount) 받는 것, ③ 금융기관 등에 담보로 제공(assignment by way of security)하고 대출을 받는 것 등의 방법이 있다. 첫 번째 방법은 일반적인 지명 채권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두 번째 방법은 일반적으로 상대방으로부터 어음을 받아 이를 할인 받는 식으로 이용하게 된다. 만일 세 번째 방법을 널리 이용할 수 있다면 기업들이 특히 物的 擔保가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매출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추가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이다.⁴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들 세 가지 방법이 모두 電子方式으로 이용되고 있다. ①은 자산유동화(ABS) 거래를 통하여 행하여진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자산보유자(originator)가 유동화 대상인 매출채권을 집합(pooling)하여 유동화전문회사(special purpose company: SPC)에 양도할 때 금융감독위원회에 유동화대상자산의 명세를 전자기록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 바, 그 내용이 금융감독원의 電子公示(DART) 시스템을 통하여 공시되고 있다. ②는 2005년 9월부터 전자어음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2004.3.22 공포, 2005.1.1 발효)에 의하여 전자어음도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③은 2000년 2월 정부의 「어음제도의 개선방향」⁴⁵⁾에 따라 전자방식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형태로 널리 행해지고 있다.

이상과 같이 매출채권을 이용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음에도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인 通知를 등기로 갈음하는 것은 널리 제3자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사실을 확실하게 公示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①의 유동화는 현금흐름이 기대되는 채권을 상당한 규모로 집합할 수 있을 때라야 현금화가 가능하고, ②는 금전채권을 거래은행을 통하여 전자어음의 형태로 발행·교부받을 때라야 이용할 수 있는데 전자어음의 실제 활용은 아직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③은 채권·채무의 거래당사자가 대기업과 협력업체인 경우에 거래은행이 관여하여야 대출을

44) 박원일, “전자채권등록제도와 국내 입법”, 107면.

45) 재정경제부는 어음의 분실, 위·변조 사고가 끊이지 않는 데다 신용경색기(credit crunch)에 받아들여 어음의 연쇄 부도로 흑자도산이 속출하자 어음제도의 점진적 폐지를 유도하기로 했다. 그 계기가 된 것은 IMF 사태 직후 25~30%의 초고금리와 신용경색이 이어지면서 흑자도산이 급증하였기 때문이다. 일부 신용이 떨어진 기업의 부도가 발생하면서 어음거래가 위축되고 이는 다시 자금난에 처한 기업의 부도를 유발하였다. 삼성경제연구소, 「IMF 사태 이후 업종별 동향(1)」, 1998.3.17. 이에 따라 정부는 취급은행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가며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 기업구매전용카드제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받을 수 있다는 제약이 따른다. 더욱이 전자채권의 양도가 거래은행과 금융결제원을 통하여 이루어짐에도 금융결제원이 공무소가 아닌 관계로 내용증명우편 등을 통하여 확정일자를 갖추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에 특칙을 두어야 했다.⁴⁶⁾

그러므로 채권양도를登記할 수 있다면 당해 채권의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하여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에 의하여 통지를 한 것으로 보므로 對世的 效力을 갖게 된다.⁴⁷⁾ 이는 중소기업이 금전채권을 가진 경우 보다 확실하게 채권양도를登記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채무자의 또 다른 채권자를 포함한 누구에 대해서나 채권양도의 사실을 주장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2. 채권양도 대항요건의 登記에 따른 이점

채권양도의 대세적 효력은 다수의 채권자가 서로 다투는 다음과 같은 사례에서 확연하게 드러난다.

예컨대 A사가 여러 채권자 중 하나인 B사에 금전채권을 양도하였을 때 다른 채권자의 간섭을 피하고 채무자의 이중변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별통지(separate notice)하는 것보다 등기에 의한 공시(public notice)가 더 효과적이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C은행이 아파트 건설업체에 프로젝트 파이낸스 방식으로 자금을 공여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 경우 C은행은 아파트분양대금을 수입하는 계좌를 시행사 명의로 개설하고 동 예금채권에 대하여 질권을 취득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시행사는 자재납품업체, 건설근로자 등 수많은 채권자를 두고 있으며 이들 채권자는 제3 채무자인 C은행이 질권 취득한 예치금에 대하여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있다. 가압류 신청이 들어오는 것만으로 C은행이 질권행사에 지장을 받는 터에 많은 경우 本案訴訟까지 벌어져 재판 결과 거액을 대출해준 C은행이 예치금을 가지고 대출채권의 회수에 충당할 수 없는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

46)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0조에 의하여 금융결제원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으로 행해지는 채권보관은행의 구매기업에 대한 통지에 유효하게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게 되었다.

47) 일본 법무부 자문기관인 法制審議會의 電子債權法部會에서 최근 공표한 「電子登錄債權法制에 관한 中間試案」에 의하면 “전자등록채권은 그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에 기한 채권과는 별개의 금전채권으로서 당사자의 의사표시 외에 전자채권등록기관의 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발생 및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다. 즉, 일본에서 입법추진 중인 전자등록채권은 우리나라의 전자어음채권에 해당하는 것이다. NBL, No.839 (2006.8.15) 20~40면 참조.

그러나 채권양도계약을 곧바로登記할 수 있다면 채권을 양수한 은행은登記시점을 기준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하여 優先權을 주장할 수 있으며, 그 만큼 다른 채권자가 이를 압류, 가압류할 가능성은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현재 자산유동화의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에 유동화계획을 등록하는 즉시 유동화대상 자산목록이 금융감독원의 DART 시스템을 통하여 곧바로 공시되는 것과 별 차이가 없게 된다.

또 채권양도계약을登記하는 경우 채권의 移轉的 양도계약뿐만 아니라 채권을 담보 목적으로 하는 設定的 양도의 합의도登記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채권의 교환·할인 등의 債權的 계약은 물론 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과 같은 物權的 합의도登記의 대상이 될 수 있다.⁴⁸⁾ 채권양도의 特例를 인정하자면 장래 발생할 것이 확실하거나 조건의 성취에 의하여 발생할 것이 확실한 채권까지도 양도대상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현재 자산유동화, 전자어음, 전자채권 등 매출채권을 이용한 자금거래가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채권양도계약을登記소에登記하더라도 인터넷을 통하여 금융감독원의 해당 사이트를 조회하거나 서로 연결하여 볼 수 있게 한다면 혼란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IV. 새로운 접근방법의 필요성

1. 첨단 정보기술의 활용

굳이 신용대출을 받지 않더라도 기업이 자체 보유하고 있는 지재권, 매출채권 등의 자산을 담보로 활용할 수 있다면 보다 좋은 조건으로 많은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담보가치를 얼마나 용이하게 현금화할 수 있느냐,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담보권을 취득·관리하고 채무불이행 시에 이를 실행할 수 있느냐, 목적물을 채무자가 계속 점유하며 사용할 수 있느냐에 따라 기업자산은 매우 제한적으로 담보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업이 보유하는 특허권 등의 지재권은 그 가치평가

48) 일본의 경우 일찍이 채권양도등기를 법제화할 때 도쿄 법무국 민사행정부 채권등기과에서만 취급하였는데 중소기업 자금조달의 편리성과 채권양도 대항요건의 안전성 때문에 이용이 급증함에 따라 'e-Japan' 전략의 일환으로 온라인 신청제도를 도입하였다. 2000년부터는 상업등기의 전자인증제도를 새로 도입하여 인터넷에 의한 채권양도등기를 보다 활성화하였다. 박원일, "전자채권등록제도와 국내 입법", 105면.

나 환가처분이 어려워 담보로 활용하는 데 제약이 많음을 알았다. 그리고 공장 기계·기구나 원료·완제품 등의 재고자산 역시 그 가치가 상당함에도 이를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극히 한정되어 있는 실정이다.⁴⁹⁾ 공장 기계·기구는 공장부지 또는 건물 위에 설정된 공장저당권에 목록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공장저당법 제7조 1항), 창고 안에 있는 재고자산도 集合物양도 담보의 형태로 담보로 활용하고 있으나 채권자는 담보관리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담보가치를 충분히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⁵⁰⁾ 우리나라에서는 一物一權主義를 취하기 때문에 기업동산을 일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공장저당법 등 법률로 인정된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⁵¹⁾

그러나 정보기술(IT)의 비약적인 발달로 기업동산에 대하여 특정성을 확보하고 이를 개별적으로 공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다. 바로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⁵²⁾태그를 목적물에 부착하거나 내장시킴(embedded)으로써 당해 물건에 관한 정보를 기록하고 판독할 수 있기 때문이다.⁵³⁾ 현재 RFID는 유비쿼터스 컴퓨팅(ubiquitous computing)⁵⁴⁾의 핵심소재로서 그 용도가 크게 확대되고

49) 현재 기계·기구 기타 공장공용물은 공장저당권에 대한 목록추가 형태로 담보로 제공되고 있으나, 공장저당법에 의하면 같은 기계·기구라 해도 제2조의 공장, 즉 ‘영업을 하기 위하여 물품의 제조, 가공 또는 인쇄나 촬영의 목적에 사용하는 장소’에 설치된 것이라야 담보로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기계·기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이동가능성(mobility)을 전제로 한 새로운 담보제도가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50) 은행실무자의 입장에서 공장 기계·기구는 실물과 목록의 대조·식별이 어렵고 리스물건과의 혼동 우려, 공장 밖으로의 무단반출, 제3자에 의한 善意取得 우려 때문에 담보관리에 어려움이 많다.

51) 영미법제의 浮動擔保(floating charge)제도의 국내도입 가능성을 검토한 논문으로는 박현일, “미국의 부동담보제도”, 비교사법, 2003.12. 참조.

52) RFID는 전파식별이라고도 하는데, 초소형 마이크로 칩과 안테나로 구성되어 있다. 이동용 단말기(mobile device)와는 달리 가격이 저렴하고 사용방법도 간편할 뿐만 아니라 그 용도가 무궁무진하다. RFID를 이용하여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USN)를 구축하면 우리는 공간과 거리의 제약이 없고, 네트워크, 단말기, 서비스, 콘텐츠의 제한이 없는 환경 속에서 살게 된다. 유비쿼터스 서비스는 언제 어디서나 접속이 가능하고, 고도로 지능화된 시스템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온/오프 라인이 연계되어 자연스러운 정보통신기기의 사용이 가능해진다.

53) RFID태그는 판독기(RFID reader)를 통해 정보를 읽거나 고칠 수 있는데 부착하는 물건의 성상에 따라 원판형, 라벨형, 카드형, 상자형 등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다. RFID태그는 데이터의 송수신이 가능하고, Passive(비활동성) 태그는 배터리가 없어도 작동하며, 전원이 내장된 경우에는 스스로 전파를 발생시키는 Active(활동성) 태그가 된다. 얇고 작게 만들어 물건 속에 집어넣거나 스프레이로 붙일 수도 있다. 현재 RFID태그는 정보를 읽기만 할 수 있는 저가형에서부터 각종 데이터를 읽고 쓸 수 있는 고기능 제품까지 다양하게 나와 있다.

54) ‘유비쿼터스’(ubiquitous)란 본래 ‘언제 어디서나 존재한다’는 라틴어에서 유래하는 말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주변환경 속의 새로운 공간을 의미한다. 팔로 알토에 있는 제록스 연구소(PARC)의 컴퓨터 공학자 마크 와이저는 1991년 “많은 사람이 한 대의 대형 컴퓨터를 공유하던 메인 프레임

있거니와 특히 유통·물류 분야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기계·기구나 원료, 반제품, 완제품에 RFID태그를 부착하거나 내장시키고 이를 RFID 리더로 통제한다면 적은 비용으로 이들 기업동산의 위치와 가치를 파악할 수 있고 나아가 이를 전자방식으로公示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담보목적물을 특정할 수 있다면 이를 등기·등록하는 방식으로 채무자가 계속 점유·사용하면서 담보권(non-possessory security interest)을 설정하는 일이 가능해진다. 만일 RFID태그에 기록된 정보를 소정 양식에 따라 전자적으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마치 저당권과 같이 채권자에게 우선변제적 효력을 부여하면서 담보가치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기업동산에 RFID태그를 부착하여 담보관리를 하는 또 다른 이점은 담보목적물에 관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할 수 있으므로 채권회수를 위해 담보권을 실행하는 것이 훨씬 용이해진다는 점이다. 예컨대 기계·기구나 재고자산을 경매에 붙이는 경우에도 목적물에 관한 상세한 정보가 자동적으로 거래소에 공시되므로 원매자가 상세한 정보를 확보하고 경매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e-마켓플레이스의 조성

그 동안 기업동산이 담보로서 효용이 떨어졌던 것은 완제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품가치가 떨어져 제값을 받고 이를 처분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가치를 최대한 발굴하여 원매자를 찾고 관련정보를 공시하여 거래가 성립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위에서 말한 목적물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공시하고 더 많은 거래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마켓플레이스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전세계적으로 인터넷 이용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현실의 市場뿐만 아니라 사이버공간에도 거래소를 만들어야 한다. 관심있는 원매자, 투자자들이 거래정보를 열람하고 거래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경매(auction)와 같은 다양한 거래방식을 통해 거래가 활기를 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이 시장참여자를 확대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마켓플레이스(e-market place: e-MP)를 조성하

임 시대에서 개인용 컴퓨터 시대를 거쳐 개개인이 현실세계와 효과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많은 컴퓨터를 사용하는 제3의 컴퓨팅 파도가 닥칠 것"이라고 일찍이 예견하였다.

는 일이 급선무이다. 국내 거래자는 물론 해외에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는 거래방식을 유지하고 英文으로 된 사이트도 운영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e-마켓플레이스에서는 전문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도 훨씬 용이해진다.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거래를 할 수 있어야 하므로 이러한 전문가들을 통하여 거래목적물의 감정, 진품 여부 확인, 적정가격 제시, 거래성사 지원과 같은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⁵⁵⁾ 이를테면 금융시장에서의 블룸버그 통신사와 같이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고 계약의 체결을 지원해주는 전문기관의 존재가 반드시 필요하다. 시장이 그리 크지 않은 미술품·골동품 시장에서도 소더비(Sotheby's), 크리스티(Christie's)와 같은 거래소가 오랜 기간 전통을 쌓으며 성가를 올리고 있음을 참고할 만하다.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가 각종 공매물건에 대하여 온라인 공매 포털사이트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⁵⁶⁾

그리고 e-마켓플레이스에는 목적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 물건을 팔고자 하는 소유자(권리자), 금융업자(financier), 외국의 바이어까지 네트워크로 연결한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필요하다면 거래 및 결제를 보장하는 기관이나,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도 네트워크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물리적인 조직의 통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하여 기능을 상호 연결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예컨대 현금흐름이 기대되는 기업동산, 지재권은 자산유동화(asset-backed securitization: ABS)의 대상이 되어 유동화전문회사(special purpose company: SPC)에 양도하는 일이 많으므로 당해 물건이 유동화된 것인지, 아니면 동산담보로 제공된 것인지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유동화대상 자산은 현재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 시스템⁵⁷⁾에 공시되고 있으므로 금감원 사이트와 링크시켜놓거나 목적물의 중복 여부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다면 투자자, 원매자들의 혼란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55) 현재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의 유틸설비 매매를 알선하는 사이트(<http://www.findmachine.or.kr>)를 운영하고 있다. 매각설비에 관한 정보는 매각 희망자가 등록한 것을 그대로 제공하고 거래는 당사자들이 책임지고 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매매중개기관이 중고차를 거래할 때처럼 약간의 수수료를 받더라도 설비의 상태를 조사하고 기준이 되는 감정가격을 제시한다면 거래가 보다 활기를 띠 것으로 생각된다.

56) KAMCO는 지난 40년간 자산처분을 위한 공매장을 운영해 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캠프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다양한 공매정보를 통합하여, 누구나 인터넷에서 직접 공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입찰자는 인터넷으로 입찰서를 직접 제출하고 입찰집행자는 인터넷상에서 낙찰자를 선정하여 그 결과를 즉각 제공하며, 보증금 환급까지 윈스톱으로 처리하고 있다. <<http://onbid.co.kr>>

57) DART 시스템(Data Analysis, Retrieval and Transfer System)이라고도 한다. <<http://dart.fss.or.kr>>

담보권의 실행 과정에서 담보가치가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고 담보물이 원활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감정평가 전문회사와 중고 기계·기구 매매거래의 마켓 메이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업자를 네트워크로 연결하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법제도상으로 담보권의 효력이 확실하고 담보권실행절차가 간편할 뿐만 아니라 그 비용도 저렴하게 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3. 배드뱅크의 필요성

IMF 외환위기 때 부동산담보에 치중하였던 국내 은행들은 엄청난 부실채권을 떠안았고 결국 KAMCO에 이를 매각하는 등 구조조정을 단행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당시 KAMCO는 자산유동화 등 다양한 기법을 활용하여 부실채권을 효율적으로 매각하고 공적 자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었다.⁵⁸⁾

금융기관들이 기업의 기계·기구, 재고자산, 매출채권, 지채권 등을 담보로 취득하는 것을 기피하는 것은 담보가치를 평가하기가 어렵고 담보자산을 관리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경매를 통하여 담보물을 환가처분해야 하는데 적당한 원매자가 적시에 나서리라는 보장이 없는 것도 이들 자산의 담보취득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목적물의 가치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현금흐름(cash flow)을 예상하고 분석할 수 있다면 투자자와 원매자들은 훨씬 안심하고 거래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부실채권(non-performing loan: NPL)을 정리해 온 KAMCO와 같은 자산관리회사의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담보자산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배드뱅크(bad bank)를 만들 필요가 있다. 만일 KAMCO가 부실채권을 처분하듯이 담보목적물을 일괄 인수하게 한다면 채권은행들은 크게 염려하지 않고 기계·기구, 재고자산 등을 담보로 취득할 수 있을 것이다. 배드뱅크가 팔리지 않는 담보자산을 안정적으로 인수해 준다면 금융기관들은 종래 기피대상이었던 기업동산, 지채권도 담보로 취득하려 할 것이다.

그러므로 中古기계·기구, 재고자산을 효과적으로 매입해 줄 수 있는 基金을 설치하고 기업의 매출채권과 함께 자산유동화 같은 기법을 통하여 자금을 회수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 중고기계·기구, 재고자산, 지채권은 앞에서 말한 데이터베이스를 갖추고 전문기업을 통해 관리함으로써 그 가치를 높이거나 국내외

58)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 <<http://www.kamco.or.kr>>의 “업무소개”란 참조.

판매망을 통하여 좋은 가격으로 매각할 수 있을 것이다. 동질적인 대상자산이 어느 정도 확보된다면 일괄하여 매각하거나 유사한 것을 풀링하여 자산유동화를 시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중고기계가 동남아 등지에 수출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국내 투자자는 물론 해외 바이어와 투자자까지 유치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V. RFID를 활용한 動産擔保管理

1. RFID를 이용한 현행 문제점의 극복

유비쿼터스 시대에는 한 사람이 유·무선을 통하여 다수의 컴퓨터를 공유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수백, 수천 대의 컴퓨터에 접속할 수 있으며, 어떠한 물체도 이와 같이 네트워크로 연결할 수 있다. 네트워킹 대상도 PC는 물론 포켓용 컴퓨터, 이동전화, PDA와 같은 모바일 디바이스를 가리지 않는다. 일상생활에서도 ‘스마트’라고 이름붙인 옷, 시계, 안경, 휴대용 전자기기, 가구와 집기 등에 센서, 마이크로 칩을 내장시켜 인터넷망으로 연결(embedded Internet services)하는 꿈같은 현실이 펼쳐지고 있다.

RFID 관련기술은 유비쿼터스 시대의 핵심으로서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며 기술적인 난관도 하나하나 극복해 가고 있다.⁵⁹⁾ 물론 여러 담보물(금속, 플라스틱류, 목재·종이류, 의류 등)에 부착 가능한 RFID 소재를 개발하고, 앞서 언급한 것처럼 위·변조, 해킹, 복제방지 기술의 개발 및 대량·동시 판독상의 인식률 제고, 오류방지 기술을 개선하여 신뢰성을 확보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현행 등기·등록제도에 적용하기 위한 프로토콜을 개발하여 현행 제도와 호환이 되도록 하고, 등기소와 각 기업·공장의 플랫폼의 범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플랫폼을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

현행 기업동산담보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非占有型 담보권에 필수적인 마땅

59) RFID를 둘러싸고 문제가 되었던 것은 RFID의 성능 및 내구성, 기존 시스템과의 연결 작동 여부, 주파수 대역의 확보, 여러 기업간에 RFID를 제휴하는 경우의 시스템 오류, 그에 따른 거버넌스(自律規制 방식)와 코스트 분담, RFID의 데이터 형식 및 운용(operation)의 공통화에 관한 것들이다. 또한 무권한자의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본인식별장치를 갖춰야 하고 위·변조, 복제, 무단 철거 등의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보안 시스템도 필수적이다. RFID-리더의 표준화, 통신-데이터 프로토콜의 표준화, 업계이용의 표준화 등 표준화 작업도 시급하다. 오퍼레이션의 변경, 예러 발생 시의 대처방법, 이용자 교육, RFID가 여러 곳으로 이동하는 경우 그 前과 後의 오퍼레이션의 연결에 있어서도 기술적인 솔루션이 요청된다.

한 公示方法이 없다는 것이다.⁶⁰⁾ 이를 위하여 신뢰성이 있고 간편하게 수용할 수 있으며, 현행 등기·등록제도에 큰 무리 없이 편입시킬 수 있고 도입에 많은 비용에 들지 않는 동산담보제도의 공시방법을 찾아야 한다. 기계·기구, 재고자산과 같은 기업동산은 이동가능성이 높은 데다 유사한 물건과 혼동되기 쉬우므로 그 特定性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가 필수적이다.

그 해결방안으로서는 소형이고 저렴하며 위·변조가 어려운 RFID가 최적이라고 할 수 있다. RFID는 기업의 담보관리 및 모니터링에 필요한 데이터의 읽고쓰기가 가능하며, RFID 자체의 위·변조, 복제, RFID 부착물의 불법반출을 막을 수 있다. 금속에도 부착 가능한 RFID태그의 신기술이 속속 개발되고 있고, 그 가격도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다. 또한 RFID 플랫폼을 인터넷망에 연결하면 법원의 현행 전자등기 시스템⁶¹⁾에 적용하는 데에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예컨대 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기구, 창고 안의 재고자산에 RFID태그를 부착하고 당해 물건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기록해 놓는다면 담보관리가 수월해지고 리스 물건과 혼동되거나 불법 반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RFID에 기록된 정보가 전자적인 방법으로 법원 등기부에 등재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등기관이 등기번호, 등기연월일을 부여하고 내용 및 절차상의 오류를 시정할 수 있도록 한다면 관리상의 어려움도 대부분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한 가지 문제는 RFID를 이용한 새로운 공시방법을 채택하자면 物權法定主義에 입각하여 현행 동산담보법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2. RFID를 활용한 담보관리

실제 RFID를 활용한 동산담보관리 사례를 가상해 보면 다음과 같다. 기업이 담보로 제공할 기계·기구, 반제품, 재고자산에 RFID태그를 부착하고 일정 기준에 따라 당해 담보물에 관한 정보를 RFID에 입력한다. 여기서 RFID태그에 입력해야

60) 현행 민법상 물건변동에는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공시방법을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 있다. ▷부동산 및 특수동산(자동차, 중기, 선박): 등기, 등록 ▷동산: 점유(따라서 질권을 설정하려면 목적물을 인도해야 함) ▷양도담보는 '신탁적 소유권이전'이라는 판례상의 공시방법을 취하고 있다. 또한 기업동산은 기업이 계속 점유하고 사용해야 하므로 일반적인 공시방법을 취할 수 없고 금융기관 앞 담보제공이 곤란한 실정이다.

61) 대법원은 1994년부터 등기특별회계법에 의거 사업예산을 확보하고 전산화작업에 본격 착수, 1998년 10월에는 부동산등기, 2000년 7월에는 법인등기의 對民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그 결과 상업등기, 부동산등기 등 각종 신청 및 조회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담보물에 관한 정보는 당해 물건에 관한 登記事項이 된다. 즉 물건을 特定할 수 있고 이를 등기한다면 당해 물건에 대한 권리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도록(효력발생요건) 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RFID태그가 부착 또는 내장된 물건에 대하여 動産抵當權⁶²⁾을 설정하고 이를 관리, 실행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RFID태그에 기록하고 등기하여야 할 사항은 목적물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기계·기구의 부품별,⁶³⁾ 또는 재고자산 등 목적물의 性狀, 제작자의 표시, 모델번호, 제작연도, 채무자의 상호·명칭,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채권자/담보권자의 상호·성명, 주소, 피담보채권(또는 양도담보, 리스) 등이다. RFID에 기록되어 있는 데이터는 전자기록매체를 통하여 登記官에게 제출하고 소정 양식에 따라 등기부에 등재한 다음 등기번호, 등기연월일을 부여받아 다시 RFID태그에 기록한다. 이 과정에서 등기관은 일정 기준에 어긋나는 RFID 기록에 대하여는 그 訂正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요컨대 RFID 기록과 등기부는 그 내용을 일치시키는 것이 담보 관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가칭)「기업동산 등의 담보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된다면 담보관리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생각된다. 즉, 동산담보물에 RFID태그를 부착한 후에는 채권은행의 위임을 받은 담보관리인이 정기 또는 수시로 현장을 방문하여 RFID 리더기를 휴대하고 담보물 설치장소를 순회하는 것만으로 담보물건의 현황(status quo)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이를 등기부와 대조·확인할 수 있다. 이해관계인들도 인터넷을 통하여 등기소에 접속, 목적물이 일치하는지 조회해 보고 필요한 사항의 입력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당해 담보물에 대한 권리관계를 공시, 열람할 수 있다. 또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해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등 RFID에 의한 담보권 설정 및 관리, 실행도 훨씬 용이해질 것이다.

그러므로 RFID를 이용한 새로운 동산담보제도는 사업추진의 효과를 보아가며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동산저당권의 설정 및 관리에 무슨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선 리스 물건에 RFID를 부착하여 시행해 보고 신설 공장부터 적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시범사업을 통하여 기술적

62) 미국에서는 채무자가 담보로 제공한 동산을 계속 점유·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저당권을 “chattel mortgage”라 한다.

63) 담보목적물의 분리,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분리가능한 부품 단위로 RFID태그를 붙여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타당성을 검증하는 한편 특히 RFID 기술 및 데이터의 표준화, 위·변조, 오류의 방지, 비즈니스 모델의 구축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⁶⁴⁾ 이와 동시에 금융기관들이 채권담보의 법적 효력에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규정의 제·개정 등 법제면의 준비작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RFID를 활용한 담보관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확신이 설 때 각종 대행 서비스, 중고기계 마켓플레이스의 설치, 수출 알선 등 관련사업의 인프라를 정비하고, 개성공업단지 등 南北經協사업에서도 RFID를 활용하여 관련사업을 전개하는 방안이 이르기까지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공장 기계·기구, 재고자산을 조사하고 일일이 RFID태그를 부착하면서 관련정보를 기록하는 일은 수많은 전문인력을 동원해야 하고 비용도 많이 드는 작업⁶⁵⁾이다. 그러므로 청년실업대책 내지 기술수출역군의 양성⁶⁶⁾ 차원에서 국가적 지원을 받아 시행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새로운 동산담보제도의 보급 확산을 위해서는 경과조치를 두어야 한다. 즉, 기존 공장의 공장저당권에 목록 추가되었거나 양도담보가 설정된 기계·기구에 대하여는 현황조사를 마친 후 RFID태그를 부착하고 소정 사항을 기록하여 등기를 할 때 기존 공장저당권의 순위를 그대로 유지하게 하고 양도담보의 경우에는 제1 순위 동산저당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와 같이 RFID를 활용한 동산의 담보관리는 상업등기부를 관장하는 법원 등 기소에서 관리하여야 하므로 이를 公益事業으로 수행하여야 함을 관련법률에 명시하도록 한다. RFID 담보관리에 관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BM)을 고안하여 사업화하는 경우에는 BM 특허를 인정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된다.⁶⁷⁾

64) 담보관리용 RFID의 표준화는 담보관리 수요에 부응한 데이터의 표준화, 호환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RFID 및 리더의 규격(spec), 프로토콜 부분과 해킹 등 정보보안 시스템, 소유자채권자 등의 개인정보보호(privacy) 정책 부분에서 표준화가 이루어져야만 기술의 효율성,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ID코드·주파수대역의 관리 및 할당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산자부 기술표준원에서는 RFID 관련 국가표준(KS)을 제정·보급하고 있다.

65) RFID 기술의 진보로 전자태그 가격은 많이 하락하였으나 공장을 일일이 방문하고 분리가능한 기계 부품별로 데이터를 작성하여 이를 RFID태그에 기록하고 목적물에 부착하는 일은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는 작업이다. 상업등기부가 전산화되어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에 동산담보 및 채권양도의 등기 난을 신설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으나, 인터넷 기반의 전자등기 시스템을 설계하고 등기소의 전산망과 개별 공장의 RFID 시스템을 연동시키는 일은 단계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모든 사업은 그 정책적·경제적 효용에 비추어 전자정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

66) 체제전환국을 비롯하여 많은 나라들이 동산담보법제의 정비에 주력하고 있는 만큼 RFID를 이용한 동산담보관리 방안은 법제 및 기술의 수출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된다.

67) 예를 들면, 채권은행을 위한 전자방식의 담보관리 대행 서비스와 같은 것은 비즈니스 특허를 통해 새로운 사업영역으로 인정할 수 있다. 본고에 제시한 RFID를 이용한 담보관리-전자등기 방법에 관하여는 필자가

RFID를 이용한 새로운 동산담보제도는 중소기업의 경우 담보여력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다. 자산건전성규제(BIS Rule)를 받고 있는 금융기관들도 부동산담보 의존도를 줄이는 한편 중소기업 동산담보를 통한 신규여신을 확대할 수 있게 된다. 은행 실무에 있어서도 기업의 재고자산이나 매출채권 등의 변동을 쉽게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기변동에 신속성 있게 대응함으로써 기업활동에 맞게 여신을 취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계·기구, 재고자산 등 중소기업의 유형재산에 RFID태그를 부착할 경우 종전의 이중담보의 위험을 원천적으로 불식할 수 있게 되어 보다 효율적인 담보관리가 가능해진다. 그리고 一物一權主義 원칙을 유지하면서 電子的인 公示方法을 갖출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기업의 모든 가치 있는 자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으므로 英美의 浮動擔保에 필적하는 담보제도의 혁신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⁶⁸⁾

VI. 결 론 - 법제정비방안

기업이 보유자산을 이용하여 좋은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려면 현행 법제와는 다른 동산담보 및 채권양도에 관한 特例를 인정하고 담보로 제공된 기계류, 지재권 등의 매각·유통을 촉진하는 입법이 필요하다. 따라서 (가칭)「기업동산 등의 담보에 관한 특례법(안)」 및 이의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에 다음 사항을 규정하도록 한다.

- 기계·기구, 재고자산 등 기업동산에 전자식별표를 부착·내장하고 여기에 기록된 목적물을 特定할 수 있는 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등기부에 기재하여 公示함. 다만, 법과 시행령에서는 기술의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전자식별표를 ‘RFID태그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이라 하고 그 기능을 중시하며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즉시 채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붙임.
- 전자식별표가 부착·내장된 기업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動産抵當權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도록 함.
- 동산저당권의 被擔保債權으로는 일괄하여 특정할 수 있는 채권, 장래 발생할 것이 확실하거나 조건의 성취에 의하여 발생할 것이 확실한 채권, 외국법에

2006.8.29자로 “비점유형 담보정보가 기록된 RFID 태그 및 이를 활용한 담보정보 공시 시스템”으로 특허등록(제10-0620399호)을 하였다.

68) 박원일, “RFID를 활용한 금융기관의 담보관리방안”, 192~193면.

의하여 인정된 채권도 허용함.

- 전자식별표가 제거되었거나 그 기능이 정지되어 있는 담보목적물의 동산저당권자는 이를 선의로 과실없이 취득한 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 이 법의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로서 공장저당권에 목록 추가된 담보목적물은 전자식별표를 부착·내장하고 동산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친 후 당해 공장저당권의 목록에서 제외하는 변경등기를 함으로써 종전 공장저당권의 순위를 유지한 채 동산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함. 집합물 양도담보의 목적이 된 담보목적물도 채무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 전자식별표를 부착·내장함으로써 제1순위의 동산저당권을 설정(등기연월일은 양도담보 계약체결일)할 수 있게 함.
- 법인의 금전채권을 양도할 때 이를 등기할 수 있으며 등기시점을 確定日字로 함.
- 등기되어 있는 동산이나 채권양도에 대하여는 등기사실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음.
- 기업이 보유하는 지재권은 당해 지재권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담보로 제공하되, 환가처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정부가 협력하도록 함
- 정부기관을 통하여 중고 기계 및 지재권의 매각·유통을 지원하는 온라인/오프라인 거래소(e-마켓플레이스)의 설치,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팔리지 않는 담보물을 인수하는 배드뱅크의 설립을 지원할 수 있음.⁶⁹⁾

위의 특례법은 동산담보권의 득실변동 및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특례를 인정함과 아울러 정부의 산하기관이 취급업무에 부가하여 기업동산, 지재권의 매각·유통을 촉진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⁷⁰⁾ 즉, 권리의 득실변동에 관한 실체법과 등기절차를 규정하는 절차법, 그리고 담보물의 매각·유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촉진법을 하나의 법률과 그 시행령에 담고 있다. 공시방법으로서 RFID라는 첨단 정보기술을 채용하고 있기에 하부규정에 위임할 수밖에 없는 사항도 적지 않다.

69) 정부의 협조사항을 구체적으로 시행함에 있어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특허청 등의 산하기관이 이러한 업무를 현재 취급하고 있거나 앞으로 수익사업으로 수행할 수 있다면 정부는 예산의 틀만 짜놓으면 될 것이므로 당장 豫算措置를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70) 담보물권에 관하여는 실체법, 등기절차에 관하여는 절차법의 제·개정을 요한다. 필자는 이를 하나의 특례법으로 하고 여기에 여러 가지 사업법, 촉진법을 추가하여 하나의 법률과 시행령 시안을 만들어 보았다. 필자의 국제거래법포럼 <<http://onepark.khu.ac.kr>> “공지사향” 참조.

기업동산 및 채권양도의 등기는 자금조달의 주체인 법인기업의 등기부에 기재하는 人的 편성주의가 원칙이다. 따라서 당해 법인등기부에 등재하여야 하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기존 상업등기부의 안전성을 위하여 동산 및 채권의 등기부 과일을 별도로 관리·운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유의할 사항은 첫째, RFID 기술을 활용하여 동산담보관리 목적으로 법제도를 정비함에 있어서 시범사업을 통해 금융기관들이 새로운 동산담보에 대한 담보가치, 담보관리방법, 담보권 취득 및 실행절차에 만족하고 기꺼이 대출을 해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법인기업(會社)이 이러한 새로운 담보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하더라도 제도가 정착되어 감에 따라 個人채권자에 대하여도 상업등기부를 만들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RFID 기술을 이용한 공시방법을 법적으로 인정해 주고, RFID 등을 부착한 기업동산에 전자방식으로 담보권⁷¹⁾을 설정하는 것은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기존 물권변동에 준해서 생각하면 된다. 다만, 이 법에는 담보권 설정자 및 담보권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되, 기술적으로 RFID 등이 부착된 담보물건에 대하여 리더기와 인터넷을 통해 등기소의 법인등기부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게 하는 근거규정도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이 특정 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의 존재, 담보물건의 일치 여부를 조회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담보권자는 담보권의 취득·실행·소멸을 전자방식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71) 기업동산에 대한 담보권의 성질은 登録擔保權(registered charge)라고 할 수 있다. 이 법에는 담보권 설정자 및 담보권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외에도 피담보채권 및 그의 양도, 담보목적물의 거래, 제3 취득자, 담보권의 실행, 환가방법, 대금의 배당, 담보권과 관련된 손해배상 기타 권리구제, 담보권의 소멸 등에 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토론

고충곤

한국정보통신연구진흥원 IT지재권센터 센터장

토론

권재열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지적재산 담보제도 활성화 방안

권재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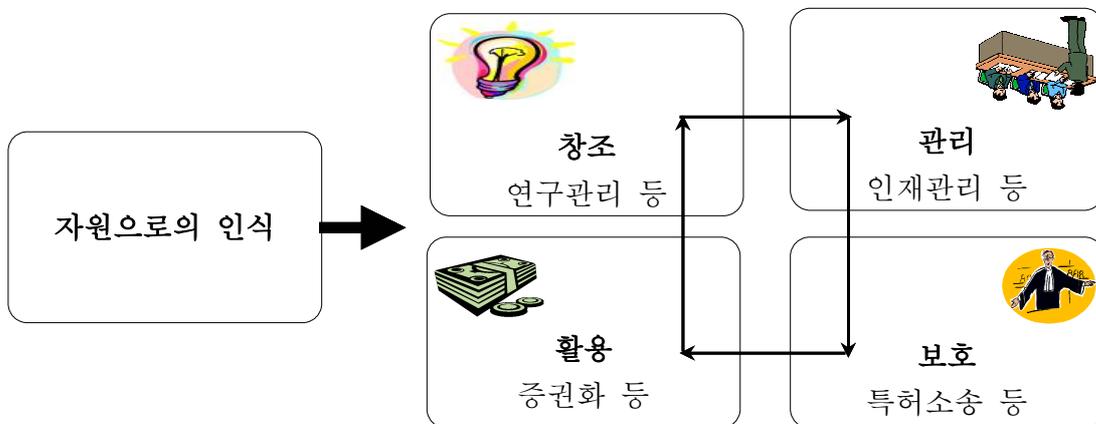
승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I. 지적재산권 전략

1. 지적재산의 활용사이클

□ 지적재산은 그것을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한 후부터 창조→관리→보호→활용→이익의 재투자→개량을 위한 창조 등의 과정을 밟게 됨.

[그림-1] 지적재산의 활용사이클



자료: 出口知大, 「企業の価値と知的財産(3)-知的財産の評価手法-」レポート no.20(浜銀総合研究所, 2004)를 바탕으로 수정

□ 지적재산의 순환과정이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지적재산의 창조전략, 지적재산에 대한 보호전략, 지적재산의 활용전략 및 인적 기반의 충실이라는 분야들이 제대로 수립되고 성실이 이행되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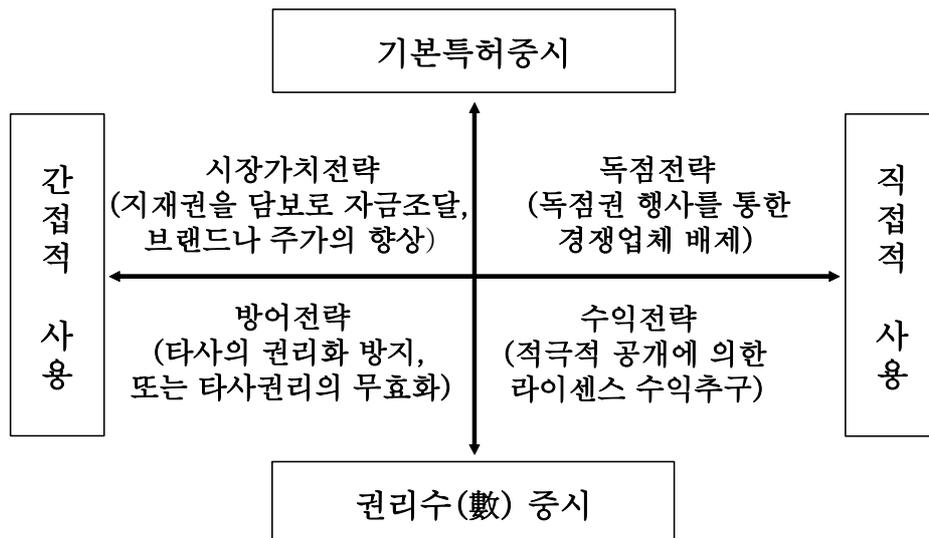
- 먼저 대학, 연구소, 기업이 양질의 지적재산을 창출하면 이를 타인에게 침해되지 않게 특허출원 등의 권리보호가 필요함.

- 그 다음으로, 지적재산을 이용·활용해 기업수익창출을 도모할 수 있음.
-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면 수익창출이 용이하게 되므로 지적재산권 분야에 자금이나 우수한 인재가 투입될 것이고, 궁극적으로 그것이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면 연구개발에 재투자가 이루어지는 선순환구조가 실현될 것임.

2. 특허전략

- 특허전략은 다음 [그림-2]과 같이 4가지로 나누어 세분할 수 있음
 - 시장가치 전략으로는 특허권 등의 직접 권리행사가 아니고 그 잠재적 가치를 이용하여 기업전체의 가치를 높이고 주주나 채권자로부터 자금을 취득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음
 - 독점전략은 직접 권리를 행사하여 타사의 시장진입을 저지하고 자사제품을 시장에서의 독점을 도모하는 것
 - 방어전략으로는 자사제품을 방어하기 위해 타사의 권리에 대응하는 것 혹은 크로스 라이선스 전략 등이 있음
 - 수익전략으로는 적극적인 공개를 통해 라이선스 수익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함

[그림-2] 특허전략의 유형



자료 : 知的財産管理委員會 第1小委員會, “企業經營における知的財産の活用—ナレッジマネージメントを中心とした新しい知的財産マネージメントのあり方—,” 「知財管理」 Vol.51 No.9(日本知的財産協會, 2001), 1447면

II. 지재권 담보제도의 지위

- 지재권을 보유한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은 다양
 - 실제로 자금조달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는 주식을 발행하는 방법, 채권(회사채)을 발행하는 방법,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방법 등이 있음
 - 기업이 직접적인 자금조달의 주체가 되지 않고 지재권을 양도하고 그것을 근거로 증권을 발행하는 비(非)기업재무적인(non-corporate) 방식도 존재함
 - 기업이 어떠한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할 것인가는 조달할 자금의 성격과 규모 및 자금운용·투자자 측면의 사정 등에 달려있지만, 이것들을 재정(arbitrage)하는 지표는 리스크를 전제로 한 금리임

- 기업이 주식을 발행하는 것은 증자를 통해 자본을 증가시키는 방법이지만, 발행주식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1주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음
 - 특히 기업이 보유한 특허를 적극적으로 공시한다고 하더라도 자본조달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형편임
 - 주식의 자본비용은 부채의 그것보다도 높은 경우가 보통임

- 주식은 자익권(自益權)¹⁾을 비롯하여 공익권(共益權)²⁾을 표창하는 증권이므로 기업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기업의 지배구조에 변동을 야기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주식발행후에는 정기적 혹은 수시로 재무상태 등을 공시를 하는 등 주주 및 기타 이해관계자의 감시·감독을 받아야 하는 등의 부담이 있음
 - 기업이 증권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증자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신뢰를 가진 기업만이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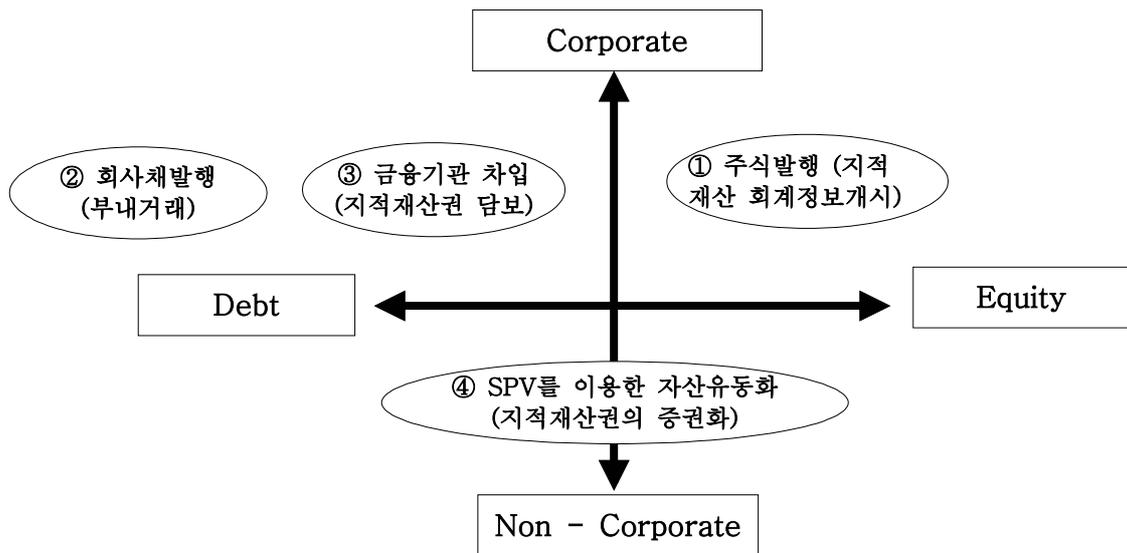
- 특허를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방법이 있음
 - 이 경우 담보로서의 특허의 가치를 평가하기가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담보권설정이나 담보권실행의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음

1) “자익권”이란 주주가 회사로부터 경제적 이익이나 기타 편익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의미하며, 그 대표적인 예로서는 이익배당 청구권이 있음

2) “공익권”이란 이사감사의 해임 청구권 처럼 회사운영에 참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행사하는 권리를 뜻함

- 특허가 급격하게 진부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담보가치의 변화를 예측하기 곤란
- 차입한 자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을 때 담보권자가 당해 담보를 쉽게 처분할 수 없다는 어려움이 있음
 - 담보된 지재권을 처분할 수 있는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환금화가 쉽지 않음
- 자산보유자의 신용을 바탕으로 한 지재권담보의 경우 그의 신용력이 악화되면 불가피하게 담보를 처분하여야 함
 - 특허담보를 통해 금전을 차입한다고 하더라도 그 차입에는 다양한 사업상·재무상의 제약이 부과되는 경우가 많음

[그림-3] 기업의 자금조달수단의 비교



자료 : 櫻井勉, “知的財産で資金調達ができる!?!—知的財産權と證券化の關係—,” 「Right Now!」通卷 2號(稅務經理協會, 2003), 17頁을 바탕으로 하여 수정·보완함

Ⅲ. 지적재산권 평가방법

- 특허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가치평가기관이 그 가치를 평가하여 가격을 산정하거나 등급을 부여하는 절차가 필요함
- 특허가 일정기간동안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발생시키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일반적으로 그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기 곤란

- 특허는 독립된 상품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대개 다른 특허 등과 함께 사용되어지는 까닭에 가치평가가 매우 어려워 담보거래의 대상이 되기가 곤란함
 - 지적재산은 무형자산의 일종이며 경험과 지식속에 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전통적 금융자산 가치평가와는 다를 수밖에 없음
 - 특정 지적재산은 다른 지적재산자산이나 유형자산과 연계되어야만 그 가치가 실현되는 경우가 다수
 - 연구개발에 관련된 위험을 통상적인 금융시장에서의 위험과 비교해 볼 때 전자는 후자에 비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상이하여 그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전통적 투자분석보다 어려움

- 지적재산의 가치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화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지적재산사업의 흥망이나 사회적 요구(needs)의 변화, 경제적 환경의 변화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할 수밖에 없음
 - 기존의 지적재산가치의 평가방법들은 특허권의 경제적·지적재산적 가치가 독립적이라는 가정을 하고 있으나 이는 비현실적임

- 지적재산의 가치는 매우 다양한 형태로 평가하여야 하며, 특정 지적재산에 대해서는 어떠한 입장에서, 어떠한 용도로, 또한 어떠한 효과를 추구할 것인가에 따라 평가결과가 많이 달라짐
 - 평가주체를 기준으로 할 때 기업차원의 가치평가와 금융기관 차원의 평가, 국가차원의 가치평가가 상이함
 - 평가목적을 기준으로 할 때 특정지적재산에 의한 상품의 수요예측 또는 전반적인 경제적 가치평가인지에 따라 평가가 상이함

- 특허는 고유한 독자성만으로 가치가 있는 경우도 많아, 유사한 다른 자산에 대해서 사용되고 있는 지표 자체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음

- 일본변리사회가 2002년 3월에 발표한 “지적재산가치평가의 니즈 조사보고서”는 지적재산의 가치평가를 함에 있어서 각 평가항목마다 고려하여야 하는 평가내용 및 평가자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는 항목이 매우 다양하다고 밝히고 있음([표-1], [표-2] 참조)

[표-1] 지적재산권의 평가항목에 따른 평가내용

평가항목	평가내용
기술적 가치평가	기초기술, 고도기술, 방어특허, 개량특허, 대체기술
법적 가치평가	기본특허, 주변특허, 방어특허, 권리의 유효성, 권리가치
경제적 가치평가	사업성, 수익성, 특허의 기여도, 사업의 실시가능성, 사업의 안전성

출처 : 「知的財産價值評價のニーズ調査報告書」(日本辨理士會, 2002.3.)

[표-2] 지적재산권의 평가주체에 따른 평가항목

평가자	평가항목
법원	파산시의 평가, 채무변제시의 평가(양도대가), 손해산정시의 평가
기업	발명자보증, 양도대가, 라이선스대가, 자산가치, 수익가치, 사업가치
금융기관	담보가치, 담보처분시 평가, 용자심사시 평가
투자자	투자가치, 기업의 가치평가

출처 : 「知的財産價值評價のニーズ調査報告書」(日本辨理士會, 2002.3.)

- 현재 국내의 특허평가기관은 기초자산의 평가에 필요한 인력, 자료축적이나 노하우를 충분히 갖추지 못한 상태임
- 현재 국내의 기술평가기관은 기초자산의 평가에 필요한 인력, 자료축적이나 노하우를 충분히 갖추지 못한 상태임
 - 2006년 6월 27일 대통령 주재 제9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보고된 “선진경제 도약을 위한 지식재산 전략체계 구축방안”에서의 기술평가관련 실태는 다음과 같음
 - 국내에는 기술이전촉진법 등에 따라 2006년 6월 현재 42개 기술평가전문기관이 지정되었으나, 일부기관을 제외하고는 평가실적과 전담인력이 매우 미흡함
 - 2004년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전체 기술평가건수의 95.6%에 해당하는 8,483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2.1%에 이르는 185건을 수행하였을 뿐, 그 외 10건 이상 평가를 수행한 기관은 6개에 불과함
 - 기술평가기관 중 15개 기관만이 전담인력을 2명이상 보유하고 있으며, 전담인력을 1명 보유하거나 전혀 보유하지 않은 기관이 25개로 조사됨
- 특허의 평가기법도 아직까지도 연구개발 중에 있는 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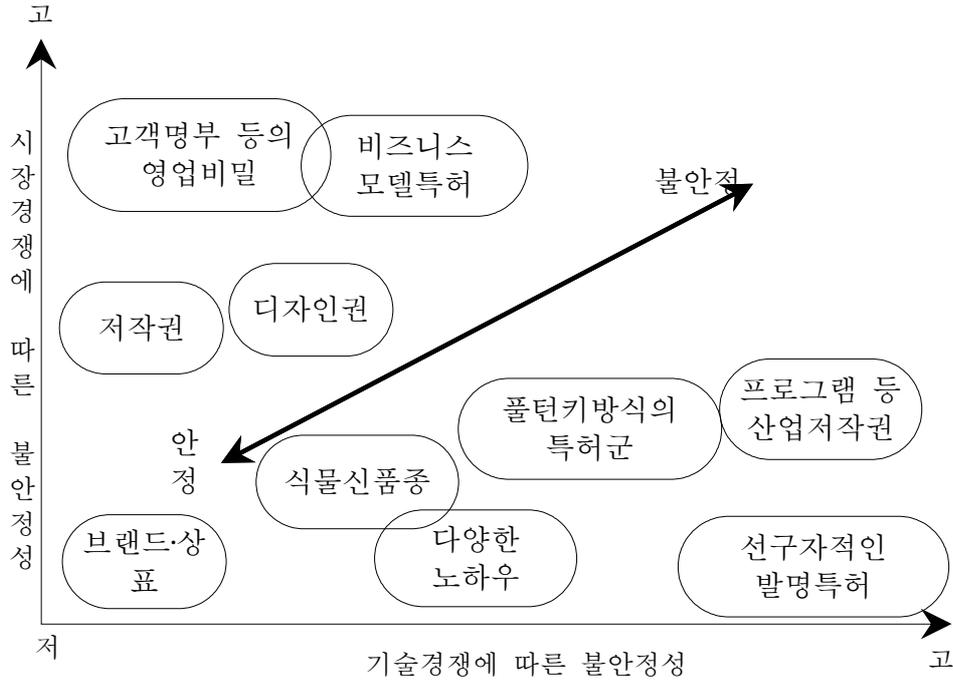
- 따라서 설령 국내기관이 평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평가등급을 액면 그대로 믿어 공신력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지 않음
 - 외국의 지적재산평가사를 이용하는 것은 많은 비용부담을 수반

IV. 지적재산권의 진부화

- 지적재산권이 발전과 발전을 거듭하여 계속적으로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지적재산의 진부화(obsolescence), 즉 지적재산의 수명주기가 짧다는 것을 시사
 - 따라서 경쟁이 치열하거나 혁신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지적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한 권리가 경제적으로 진부화될 리스크가 높아 강력한 대체 지적재산권 등이 출현한다면 단기간 사이에도 가치가 현저하게 추락할 우려가 있음
- 과거의 현금흐름이 장래의 현금흐름을 예측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아닌 경우에는 진부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
 - 반도체와 같은 최첨단 기술의 경우에는 새로운 기술이 출현하면 기존 기술의 가치급락 위험
- 지적재산권의 진부화는 안정적인 현금흐름의 확보에 치명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
- [그림-4]은 지적자산의 안정성에 관하여 기술경쟁과 시장경쟁이라는 2가지 축을 기준으로 하여 제시
 - [그림-4]은 각종의 지적재산이 법률상 부여받은 권리기간의 장단(長短)과는 상관없이 경영환경의 변화를 어느 정도 변화를 수용할 것인가를 도표로 나타낸 것임
- [그림-4]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특허는 그 유형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시장경쟁과 기술경쟁에 매우 민감하여 새로운 특허가 출현함에 따라 가치가 급락하는 등 그 자체로서 불안정성을 띠

- 특허권은 시장에서 그 가치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감소
- 대개의 경우 특허는 출원한 시점을 최정점(peak)으로 하고, 그 잠재 가치는 떨어지는 경향이 있음

[그림-4] 지적재산의 안정성 정도



출처 : 米山茂美/渡部俊也, 「知財マネジメント」(日本經濟新聞社, 2004), 178면

참조 : 플턴키(full turn key)방식의 특허권이란 어느 제품의 전 제조공정에 필요한 모든 특허를 일괄계약한 경우 그 특허 모두를 의미함

V.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다양한 리스크

1. 침해·특허 무효 리스크

□ 지적재산권의 담보로 대출을 할 경우 지적재산권의 침해소송의 대상이 될 가능성과 그 권리가 무효가 될 우려가 있음

- 비록 특허가 권리로서 인정되고 있었다고 해도, 관련하는 법규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받는 법의 아래에서 성립하고 있는 이상 그 권리는 절대적이지 않음

2. 손해배상 리스크

□ 담보가 된 지적재산권이 원인이 되어 제3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 등을 침해했을 경우 지적재산권의 보유자는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그 경우에는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을 하더라도 담보물의 가치는 급격하게 떨어질 우려가 있음

3. 소유권에 관한 리스크

□ 지적재산권권에는 공동출원, 공동개발, 직무발명 등 발명자와 사용자의 관계 등 계약을 복잡하게 시키는 많은 요인을 내포하고 있음

□ 특허권(출원중도 포함)이 제3자와의 사이에 공유되고 있는 공동출원에서 담보가 집행되는 경우 담보물의 처분 등은 다른 공유자의 권리, 공유자 사이에 체결되는 협정서내지 규약에 의한 제한으로 영향을 받는 경우가 있음

□ 공동 연구 및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특허권이 부여된 후에도 과거 공동연구자간, 발명자와 사용인간의 양도계약 등으로 인해 배상 청구 등의 가능성이 있어 담보가치를 해할 우려가 있음

VI. 담보물 유통시장의 결여

□ 지적재산권이 담보로서 설정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유질계약이 있는 질권 혹은 양도담보에 의한 담보설정을 하고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을 하면 채권자가 임의로 당해 지적재산권을 매각처분할 수 있음

□ 그러나 실제로 지적재산권이 매각처분은 매각에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매각가능상대방이 담보물과 관련된 업종에 제한되어있다는 점 등이 처분상 어려움 야기

-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지적재산권의 처분을 위한 유통시장의 미성숙이 지적재산권 담보의 장애물임

VII. 여론(餘論)

□ 지재권의 진부화 속도가 빨라 사실상 담보가치가 희석화(dilution)되는 경우가 많음

- 따라서 희석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적재산권을 담보로 제공한 자는 신의를 갖고 성실하게 담보물의 가치를 유지하여야 할 의무 명시할 필요있음
 - 채무자는 담보물의 가치를 유지 내지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진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 예컨대, 특허권의 경우에는 당해 을 개량할 필요가 있으며,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버전업시키거나 업데이트(update)시켜야 담보물의 가치가 유지될 수 있음
- 지적재산권 가치 평가의 전문기관 육성 필요
- 담보된 지적재산권 유통시장 정립 필요



토론

김기용

특허청 산업재산진흥팀 사무관

지적재산권 담보대출 활성화방안

김기용

특허청 산업재산진흥팀 사무관

- 박교수님이 발표하신 내용은 중소기업의 보유자산으로서 지재권, 매출채권 또는 재고자산을 담보로 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에 대한 것으로 요약할 수 있음
 - 특히 기계·기구 등과 같은 동적인 재고자산을 담보로 하여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RFID 태그를 활용하자는 미래지향적인 제안과 함께 이를 위한 법제 정비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 그 중 본인은 특허청이 특허를 담보로 하여 특허권자에게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여러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허담보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와 함께 느낀 점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발제문에도 이미 기재된 사항이지만 특허담보제도(지재권담보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① 기술에 대한 정확한 가치를 측정하기 곤란하다는 점과, ② 담보로 잡은 특허를 처분할 유통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을 들 수 있음
 - 특허 후자의 원인이 동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주요 원인이며, 특허청이 산업은행과 '05년 특허담보대출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금융기관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한 사항임
 - 특허청은 산업은행 이후 기술보증기금, 국민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으로 동 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있으나, 모든 금융기관이 한결같이 지적한 사항이 담보물 유통시장의 부재였음

- 이로 인해 기술평가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기술평가의 역사를 논하지 않더라도 기술에 대한 평가 자체가 매우 힘든 작업이기때문에 기술평가 역사가 긴 미국의 경우에도 기술평가결과를 신뢰하지 않은 분위기임
 - 특허담보로 사업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평가는 기술의 사업성을 중심으로 기술의 미래 사업적 가치를 현재 시점에서 추정하여야 하는 작업임
 - 따라서, 그 추정의 정확성은 참고자료 정보의 양에 따라 달라지며, 정보가 많은 경우에도 미래를 예측하는 일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매우 큰 작업임

- 결국,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위험을 줄이는 방안에 대해 고민할 수 밖에 없으며, 현재 특허청과 특허담보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모든 금융기관이 그 위험을 줄이는 방안으로 기존 신용평가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음
 - 이는 국내 금융기관 중 기술평가능력을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는 산업은행과 기술보증기금의 경우도 마찬가지임

- 결론적으로 담보물의 유통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허담보사업은 리스크가 큰 사업이 될 수 밖에 없으며, 리스크가 큰 사업의 경우 현재와 같은 용자상품은 맞지 않으므로 투자상품으로 전환이 필요함
 - 현 특허담보사업에서 몇몇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으나, 아직은 용자상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특허담보사업을 도입한 금융기관에게도 적응의 시기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특허청은 투자상품 운영과 관련된 제약요인을 관찰하고 있으며, '07년에는 동 특허담보사업을 투자상품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임



토론

박 순 철

산업은행 기술평가센터장

지적재산 담보제도 활성화 방안

박 순 철

산업은행 기술평가센터장

- 발제문의 제목은 “은행의 지적권 담보대출 활성화 방안”이나 결론은 “동산 담보 대출 활성화를 위한 법제 정비 방안”으로, 제목에 부합하지 않은 결론이라고 생각되며, 지적권 담보에 대한 본문 내용도 평가방법 특히 디지털 재산권의 평가방법에 편중되어 있다는 느낌임
- 발표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 「IV. 1. 첨단 정보기술의 활용」 부분에서 가치평가나 환가처분이 어려워 지적권을 담보로 활용하는데 제약이 있다고 언급하였으며, 이 의견에 공감하고 있음
- 부언하면 가치평가의 어려움보다는 환가처분의 어려움이 지적권을 담보로 활용하는데 더 큰 제약요인이라고 생각됨
 - 담보취득 목적이 채무불이행시 담보권 실행을 통한 환가처분에 있다고 할 때 지적권의 실질적인 청산가치는 대부분 영(0)이며, 그 이유는 청산시점에서 기업의 지적권이 다음 조건 등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임
 1. 지적권의 잔여 경제적 수명이 충분히 길 것
 2. 거래 수요를 유발하기에 충분한 기술성 및 사업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가능하면 기술성 및 사업성이 검증되어 있을 것
 3. 권리관계에 하자가 없을 것
 4. 처분을 위한 상설 거래시장이 존재할 것
- 참고로 산업은행은 현재 기술가치평가대출 제도를 운용 중에 있음
 - 동 제도는 산은기술평가원이 산업재산권, 특히 특허에 대한 기술가치를 수익접근법에 의해 평가한 후, 가치평가금액 이내에서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 운영자금은 만기 1년에 최장 5년까지 연장가능하며 특허권을 양도담보계약 또는 근질권 설정의 방법으로 담보취득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신용대출로 취급하고 있음

- 동 제도는 2005년부터 운용하기 시작하였으나 2006년에는 전년 대비 실적이 감소하였음

- 지원실적 : 2005년도 22개 업체 83억원,
2006년도 10월말 현재 4개 업체 22억원
- 감소 이유는 기술가치평가를 통한 대출 규모가 투입 시간 및 비용에 비해 적어, 혁신형 중소·벤처기업 지원이라는 제도 도입 취지를 효과적으로 만족시킬 수 없었기 때문임
- 예를 들어, 2억원 정도의 운영자금 지원을 위해 평가인력 2명이 평균 4주 정도 투입될 경우, 1년간 100억원의 운영자금 지원을 위해서는 최소 8명이 이 업무에 전념해야 된다는 제약이 수반되고 있음

- 이에 따라 현재는 기술가치평가대출보다는 우수 특허기술을 많이 개발·보유하고 있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 또는 대학으로부터 기술이전을 받아 사업화하려는 중소·벤처기업이나 정부 지원 기술개발과제 성공 기업 등 초기 기술사업화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방식의 지원에 좀 더 집중하고 있는 편임

□ 산업은행이 기술가치평가대출 제도를 운용하면서 느꼈던 지적재산권 담보 대출의 중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 사업 성공 가능성은 보유 기술력, 경영진의 자질, 시장 및 산업환경, 수요처 확보 여부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기술가치평가금액만으로는 대출 상환 가능성을 예상하기 어려움
- 특허 등 지적재산권의 담보가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가치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나, 대출 금리에 추가되는 가치평가 비용이 금융 수요를 억제시키는 경향이 있음
- 지적재산권을 담보로 금융 지원을 요청하는 기업들은 담보여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대출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며, 은행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특허권리분석 등 외부용역을 위해 실비 징구하는 가치평가비용에 대해서 부담스러워 하는 기업도 상당수 존재하였음

- 지채권 담보 대출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발제문에서 언급된 가치평가 방법 및 결과의 신뢰성 확보, 채무불이행 기업 보유 지채권의 환가를 용이하도록 하는 기술거래 활성화 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매출채권의 양도 등기와 RFID를 활용한 동산담보관리방법은 산은기술평가원 관련 업무 분야가 아니라 특별히 언급할 내용을 없음
 - 다만, 동산의 담보취득은 진부화, 마모, 멸실, 도난 등의 이유로 단기 운영자금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나, 단기 운영자금 조달을 위한 담보물 감정평가 또는 담보물 관리는 투입 비용 대비 경제적 효익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토론

박지환

법무법인 다래 변호사

지재권 담보대출 활성화방안

박지환

법무법인 다래 변호사

I. 서언

발제자이신 박환일 교수님께서는 사업확장을 꾀하는 벤처중소기업이 보유자산을 가지고 은행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안으로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활용하는 방안, 매출채권을 은행에 양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새로운 접근방법으로 첨단 정보기술인 RFID태그를 활용하여 기업의 기계, 기구 및 재고자산을 담보로 활용하는 방안, 기업동산의 처분과 관련된 e-마켓플레이스(e-market place : e-MP)의 조성방안, 배드뱅크(bad bank) 설립방안 등을 제시하였으며, 결론으로 기업이 보유자산을 이용하여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현행 법제와는 다른 동산담보 및 채권양도에 관한 특례를 인정하고 담보로 제공된 기계류, 지재권 등의 매각, 유통을 촉진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여 주셨습니다.

발제문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기업의 자금줄인 금융기관들이 부동산 등 물적담보만을 선호한 나머지 자금의 주요 수요자들인 벤처기업에는 성장의 원동력이나 다름없는 기술력이나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꺼리고 있는데, 지식재산권에 대한 담보가치의 평가가 곤란하며, 또 담보로 취득한 지식재산권의 처분시장이 활성화되지 아니하여 채권회수의 곤란함이 그 주요원인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일치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은행 등 금융기관들도 IMF 경제위기 이후의 새로운 금융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종전의 부동산 담보 위주의 대출방식에서 벗어나 장래의 성장기업에 대한 투자개념의 대출을 시행하는 등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여야만 하는 필요성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전문평가기관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에 대한 담보가치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또한 담보로 취득한 지식재산권을 쉽게 처분할 수 있도록 제반 환경을 조성한다면, 별도의 지식재산권 담보제도를 창설하지 않

더라도 지식재산권에 대한 담보대출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최근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기술과 고가의 첨단장비를 보유한 기업들이 부동산 등 확실한 담보가 없더라도 자금을 쉽게 끌어 쓸 수 있도록 ‘포괄적 동산 담보제’와 ‘기술신탁제’의 도입을 추진중이라고 하지만, 이러한 새로운 담보제도가 완비되어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고, 그 때까지는 현재의 법제도하에서 벤처기업들이 담보를 제공하고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에 본 토론자는 현행 제도하에서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담보제도 및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선행조건인 기술평가제도를 중심으로 발제자께서 말씀하신 각 주제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II. 현행법상 활용가능한 지식재산권 담보제도

지식재산권은 부동산이나 동산과 달리 무체재산권으로서 현행법상 이에 대한 담보권설정은 권리질의 형태로 질권을 설정하거나, 담보목적으로만 지식재산권을 양도하는 양도담보의 방법이 가능한데, 벤처기업들에게 자금을 대출한 후 채권을 회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기관으로서는 굳이 권리자체를 이전받는 형태의 담보권을 취득할 필요성을 갖지는 아니할 것이므로, 이하에서는 질권설정에 의한 담보제도를 위주로 담보취득 및 실행방법을 간략히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1. 질권설정의 대상인 지식재산권

종래 ‘지적재산권’이라 함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구 의장권), 상표권 등의 산업재산권(발명진흥법 제2조 제4호)만을 의미하였으나, 저작권과 프로그램 저작권(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배치설계권(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데이터베이스(저작권법) 등 종전과는 다른 새로운 지적재산권이 첨단 지식기반산업의 발전에 따라 등장하게 되었고, 이를 모두 포괄하여 ‘지식재산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¹⁾.

1) 기술이전촉진법 제2조 제1호는 “기술”을 “특허법 등 관련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특허·실용신안·디자인·반도체 배치설계,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소프트웨어 등 지적재산인 기술 및 디자인·기술정보 등 기타의 기술”이라고

이러한 지식재산권은 인간유전자정보 등과 같이 지식기반산업의 분화발전에 따라 지금까지 상상하지 못한 새로운 형태로 등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종래의 지적재산권과 같이 개별 법률에 권리의 설정과 질권설정에 대한 근거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나, 새로운 형태의 지식재산권, 특히 등록제도 등 공시제도가 갖추어지지 아니한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도 질권설정이 가능한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일단 개별적인 근거법률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법인 민법에 따라 권리질권의 설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따져야 할 것인데, 민법 제346조는 권리질권의 설정방법에 관하여 그 권리의 양도에 관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권리의 양도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응 당사자 사이의 질권설정계약에 의해서 권리질권의 설정이 가능하다 할 것이나, 담보물권인 질권의 본래의 효력으로서 채권의 우선변제권한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질권의 설정사실이 공시되어 거래안전이 도모되어야 하고 그러한 경우에만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새로운 형태의 지식재산권이 등록 등의 공시제도가 갖추어지기 전까지는 권리질권으로서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는 것은 곤란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술과 산업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지식재산권이 형성되는 경우, 이를 담보로 하기 위해서는 그와 관련된 제반법률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규정과 함께 그에 관한 공시제도가 같이 갖추어져야 할 것입니다²⁾³⁾.

그러므로, 벤처기업이 현행법상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은 특허권(특허법 제121조), 실용신안권(실용신안법 제42조), 디자인권(디자인보호법 제56조), 상표권(상표법 제62조), 저작권(저작권법 제44조, 제52조), 프로그램저작권(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1조, 제26조), 배치설계권(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 관한법률 제16조),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저작권법 제73조의9) 등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2. 질권설정자, 질권자 및 제3자의 관계

폭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 2) 한편, 공시제도가 갖추어지지 아니한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도 민사집행법상 압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비록 공시가 불가능하거나 매각의 곤란성 등 여러가지 제약에도 불구하고 압류적격 자체를 부정할 것은 아니며, 결국은 일반 지식재산권의 집행방법과 같이 양도명령 등의 방식으로 환가를 할 여지가 있다 할 것입니다.
- 3) 영업비밀의 경우, 그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입법이 되어 있으나, 그 본래의 속성이 제3자에 대한 비밀성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질권의 설정은 성질상 불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지식재산권에 대한 질권설정의 경우, 질권설정자, 질권자 및 제3자의 관계를 검토할 때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을 포함한 종래의 지적재산권과 저작권,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프로그램저작권, 배치설계권 등의 새로운 지식재산권은 권리의 발생, 대항요건 등과 관련하여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즉, 특허권 등 종래의 지적재산권은 등록원부에 그 권리를 등록하고 또 권리의 이전이나 질권설정도 등록하여야 효력을 발생하지만, 저작권,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프로그램저작권 등은 창작행위에 의하여 그 권리가 발생하며, 권리의 이전이나 질권설정에 대한 등록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불과합니다. 한편, 배치설계권의 경우에는 특허청에 배치설계권을 등록하여야 권리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권리의 이전이나 질권의 설정에 대해서는 등록이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질권을 설정하는 경우, 질권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해 지식재산권을 실시하거나 사용할 수 없고 그 실시권한이나 사용권한은 질권설정자에게 유보되어 있는데, 질권설정자의 입장에서는 당해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당해 지식재산권을 사용하거나 실시함에 장애가 없으며, 질권자의 입장에서도 굳이 당해 지식재산권을 사용하거나 실시할 필요는 없이 채권회수에 대한 담보로서의 효력만 있으면 충분하므로, 지식재산권의 사용이나 실시권한이 없다고 하는 점이 대출에 대한 장애가 될 수는 없습니다(특허법 제121조 등). 또한 질권은 당해 지식재산권의 실시 또는 사용에 대하여 받을 대가나 물건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이를 통하여 채권을 더욱 쉽게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특허법 제123조 등). 다만, 공동의 지식재산권인 경우에는 타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질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특허법 제99조 등), 각별로 권리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 점 등은 질권설정에 의한 담보활용에 제약조건이 되고 있는 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한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은 질권행사로 인하여 권리가 이전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질권설정 이전에 질권설정자가 그 특허발명, 고안 및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던 경우에는 권리를 이전받은 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당해 권리에 대한 통상실시권 또는 통상사용권을 인정하고 있는데(특허법 제122조 등), 이는 질권설정자의 기업유지를 위하여 둔 규정이라 할 것이나, 다른 한편으로는 당해 권리를 취득할 경우의 일정한 수익을 보장함으로써

그 처분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할 것입니다.

또한, 특허등록령시행규칙 제47조(실용신안등록령, 디자인등록령, 상표등록령 동일)는 2이상의 특허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설정, 즉 특허권의 공동담보를 인정하고 있는데, 하나의 특허권만으로는 담보로서의 가치가 부족할 때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다른 특허권과 공동으로 질권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담보가치를 충족 시킴으로써 채권자의 채권회수가능성을 충분히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현행 법체계상 벤처기업이 가지고 있는 지식재산권이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 여러 종류일 경우에는 공동으로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수 종류의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도 공동으로 질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한데, 우선 종래의 지적재산권으로서 유사한 법체계를 가지고 있고 관할 행정청이 특허청으로 동일한 특허등록령, 실용신안등록령, 디자인등록령, 상표등록령을 통합하여 하나의 등록법제를 만든다면 수 종류의 지식재산권이라 하더라도 공동으로 질권을 설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벤처기업의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실행한 경우, 질권자인 채권은행으로는 채무자인 벤처기업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 질권을 행사하여 우선변제를 받음으로써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3. 양도담보, 가등기담보(가등록담보) 등

지식재산권도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권으로서 양도가능성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지식재산권의 권리자인 벤처기업은 채권자인 은행에게 채권의 담보목적으로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혹은 등록원부에 권리의 이전등록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록을 함으로써 담보권을 설정하는 방법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권리양도방식의 담보권 설정은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제18조)의 규율을 받고 있으며, 담보권의 실행방법은 처분정산형이 아닌 귀속정산형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지식재산권의 환가에 의한 채권회수를 목적으로 하는 은행은 물론이고 일반인의 경우에도 당해 지식재산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보편적으로 사용되지는 아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군다나 지식재산권을 담보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권의 등록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과 노력을 형식적으로라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담보제도로써 효용성이 떨어짐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4. 소결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행법하에서도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하는 방법으로는 질권설정의 방법과 양도담보에 의한 방법이 있으며,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수익창출이나 지식재산권을 유동화하는 것에 대한 별도의 고려함이 없이 단순히 담보로서 취득한다고 한다면 질권설정방법으로서 충분하다고 생각되고, 지식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담보제도를 창설할 필요성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담보가치의 평가결과 1개의 지식재산권만으로는 담보가치가 부족하다고 한다면 수개의 지식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질권을 설정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수 종류의 지식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질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 등록법제를 통합하는 방법을 입법론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Ⅲ. 지식재산권의 담보가치평가

1. 지식재산권의 담보제공을 위한 기본조건

발제자께서는 지식재산권의 담보제공을 위한 기본조건으로 지식재산권은 우선 표시된 대로 존재하여야 하며, 등록이 되어 있는 등 법적으로도 유효하게 보호를 받는 것이라야 하고,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담보권 설정 및 실행절차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하고, 지식재산권 담보등록제도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현행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법, 상표법 등은 해당 지식재산권의 효력이나 권리이전은 그 등록에 의해서 발생하고, 질권의 설정도 등록에 의해서 효력이 발생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등록절차에 있어서도 당해 지식재산권의 특정을 위한 기본적인 내용을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각각의 등록원부에는 당해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변동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며, 별도로 지식재산권의 권리범위에 대해서는 특허공보 등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지식재산권의 권리내용과 소유관계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정보들이 모두 공시되어 있다 하겠습니까. 또한 질권설정절차는 특허등록령, 실용신안등록령, 디자인등록령, 상표등록령 등에서 모두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식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거나 양도담보로 제공함에

있어서 필요한 기본적 전제조건은 이미 제도적으로 구축되어 있다 할 것입니다. 다만,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은 지식재산권 담보제공을 기본조건의 문제라기보다는 지식재산권 담보제도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의 문제라 할 것이고, 결국 지식재산권의 담보가치평가와 관련될 것입니다.

2. 지식재산권의 가치평가방법

은행 등 금융기관이 벤처기업 등 기술집약기업으로부터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자금을 대출할 때 가장 큰 난점은 담보로 잡은 지식재산권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가를 평가할 수 없고, 또 담보권을 실행하는 경우 쉽게 처분하여 대출자금을 회수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즉, 은행으로서는 벤처기업에게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제공받고 자금을 지원하였다 하더라도, 나중에 기업이 자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부도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는 담보로 제공받은 지식재산권을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부터 자금을 회수하여야 하는데, 담보로 제공받은 지식재산권의 매각대금이 대출자금에 미치지 못하거나 현실적으로 매각가능성이 없는 경우, 또는 당해 지식재산권을 원천으로 하는 수익이 장기적으로 발생하여 전체자금을 회수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 대출자금의 회수에 곤란한 사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은행이 지식재산권만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꺼리게 되었고, 또 그것이 계속하여 은행이 물적담보만을 기초로 대출을 시행하는 관행의 원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업이 담보로 제공하는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담보가치로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고, 이러한 지식재산권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기초로 지식재산권의 처분을 위한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면, 은행으로서는 부동산 등과 구별하여 지식재산권에 대한 담보대출을 꺼려할 이유는 없게 될 것입니다.

지식재산권에 대한 가치평가 또는 기술가치평가의 방법으로는, 발제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통상 비용접근법, 시장접근법 및 수익접근법 등의 평가방법이 있고, 가치평가의 대상이 되는 지식재산권의 특성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으나 대체적으로 지식재산권의 예상되는 기대수익을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수익접근법에 의한 평가방법이 널리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각각

의 평가방법에 대한 장단점이나 지적재산권별로 적합한 기술평가모델에 대해서는 발제문에서 설명하고 있고, 또한 구체적인 가치평가방법론에 대해서는 관련분야의 전문가들께서 여러 가지 형태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신뢰성있는 기술평가시스템의 부재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내 주요 5대 기술평가기관인 기술보증기금, 한국기술거래소, 한국산업은행,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발명진흥회 등이 2003년 9월경부터 공동으로 참여하여 기업, 기술 및 금융전문가로 TFT를 구성하고, 과학적인 자료분석을 통하여 2005년 6월경 기술경영 및 인적자원, 기술성, 시장성 및 사업성 등 4개 대항목을 기본으로 13개 중항목, 46개 소항목을 평가지표로 정한 “중소기업 기술평가 표준모델”을 개발완료하여, 현재 기술보증기금, 기술거래소,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서 기술평가모델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지식재산권에 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가치평가를 위한 평가모델이 국내사정에 밝은 국내기관에 의해서 개발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라 할 것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많은 시행착오와 수정을 거쳐 표준모델을 계속 발전시켜 나간다면,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에서도 표준모델에 따른 결과를 신뢰하고 담보대출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기술개발촉진법, 기술이전촉진법, 발명진흥법 등은 기술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고, 기술개발촉진법에서는 기술담보대출 손실보전금까지 지원하고 있는바, 이러한 담보설정비용이나 금융기관의 손실보전금과 같은 제도적 뒷받침은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하는 금융지원을 더욱 촉진시키게 될 것입니다.

3. 기술평가제도 및 기술평가기관의 일원화문제

지식재산권의 담보가치평가는 결국 기술이나 지식재산권을 평가하여 그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는 것인데, 이러한 기술이나 지식재산권을 평가하는 기술평가제도나 기술평가전문기관의 지정에 대해서는 여러 법률에서 산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기술개발촉진법 제4조는 정부로 하여금 기술력평가에 의한 담보대출을 활성화하도록 규정하면서 기술력평가기관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술이전촉진법 제6조는 기술평가촉진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기술거래소를 설립하고, 제8조에서는 다시 기술평가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

으며, 발명진흥법 제21조 이하에서는 특허청장으로 하여금 발명에 대한 평가기관을 지정하여 지원하도록 규정하면서, 평가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는 자에 대해서는 평가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외국인투자촉진법 등에서도 개별적으로 기술평가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기술평가제도나 기술평가기관의 지정이 통일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그 결과 현재 국내에는 정부 각 부처 산하에 수십개의 기관 또는 연구소에서 부수업무로 기술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각 기관마다 자금지원의 목적에 따라 평가방법과 평가요소가 다르고 평가결과에 있어서도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나 지식재산권에 대한 가치평가는 자금지원의 성격이나 가치평가기관에 따라 일부 평가요소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관점, 즉 기업의 기술력 및 수익성의 측면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자금지원이나 담보대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업의 기술이나 지식재산권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가치평가가 이루어지고, 또 그에 대한 신뢰가 담보되기 위해서는 각 개별법률에 따라 산재한 기술평가제도를 일원화하여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그에 따라 기술평가기관을 일괄지정함으로써 기술평가의 통일적인 기준과 모델을 정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기술개발촉진법의 규정을 기술평가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근거법률로 하면서 규모와 평가능력을 고려하여 기술평가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그 지정된 기술평가기관들로 하여금 표준화된 기술평가모델에 따라 기업의 기술이나 지식재산권을 평가하도록 하며, 다른 법률에서 기술평가제도나 기술담보제도, 기술평가기관의 지정이 필요할 때에는 기술개발촉진법의 규정과 그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을 준용함으로써 기술평가제도 전반에 있어서 일관된 체계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기술평가제도와 기술평가기관을 통일적으로 정비하고, 그에 따른 기술평가사례가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많은 양이 누적될 경우,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서도 기술평가결과에 대해서 신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기업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관행이 형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IV.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한 대출자금의 회수 - 유통시장 활성화

기업의 지식재산권이나 기술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평가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은행으로서는 담보로 잡은 지식재산권을 매각하여 자금을 회수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최종적으로는 지식재산권의 유통시장이 형성되어 쉽게 매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지식재산권에 관하여 설정된 질권의 실행, 즉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하였을 때의 문제입니다. 강제집행의 절차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으로부터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자금을 대출받은 벤처기업이 변제기 내에 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자인 은행으로서는 채무자인 벤처기업의 임의상환을 기대하지만, 벤처기업이 회생이 불가능하거나 변제계획이 불투명한 때에는 결국 질권을 실행하게 됩니다. 지식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은 민사집행법 제2장 제4절 제3관(제223조 내지 제25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의해서 진행됩니다.

따라서, 채권자인 은행은 채무자인 벤처기업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법원에 강제집행의 권원과 집행내용 등을 기재한 압류명령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지식재산권의 등록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법원은 요건을 심사하여 압류명령을 발하여야 하는데,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의 처분제한은 특허청에 비치된 등록원부에 등록을 하여야 효력을 발생하므로, 법원사무관은 특허청장에게 압류등록을 촉탁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175조 제5항, 민사집행법 제94조, 특허등록령 제20조 등).

다만 처분제한등록이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라 대항요건에 불과한 저작권,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프로그램저작권, 배치설계권 등의 경우에는 압류채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문화관광부장관, 특허청장 등에게 압류등록을 촉탁하게 될 것이므로, 은행 등 채권자로서는 채무자의 처분을 제한하고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압류명령신청과 별도의 압류등록촉탁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리고, 압류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 것은 처분행위에 한정되므로, 채무자인 벤처기업은 당해 지식재산권을 그대로 실시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데, 전용실시권이나 통상실시권은 처분행위에 속하므로 할 수 없습니다. 특허권 등 압류된 지식재

산권이 기간만료 등으로 소멸한 때에는 권리의 이전이 불가능하므로 집행절차가 취소됩니다.

압류된 지식재산권의 경우 채권집행의 경우와 같이 추심이나 전부와 같은 방법을 취할 수 없으므로, 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251조에서 정한 특별현금화로서 매각하거나(매각명령) 또는 채권자에게 양도하거나(양도명령), 아니면 관리인을 선임하여 관리를 명하는 명령(관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초과매각이나 무잉여매각금지규정(민사집행법 제188조)의 저촉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매각절차에서도 참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인에게 지식재산권의 가액을 평가하게 할 수 있는데(민사집행규칙 제163조), 법원실무에서는 회계법인등을 감정인으로 지정하여 지식재산권의 가치를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계법인에 의한 지식재산권의 가치평가는 각 회계법인마다 평가하는 방법이 상이하고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여 감정을 실시할 때마다 평가액의 규모가 천차만별이어서, 채권자인 은행이나 채무자인 벤처기업 양자 모두가 불만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법원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도 앞서 언급한 전문적인 기술평가기관에 의하여 객관화된 기술평가방법에 따라 지식재산권의 가치가 평가될 수 있도록 제도화함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현금화의 방법 중 지식재산권 양도명령은 채권의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적당한 평가액으로 압류된 지식재산권의 양도를 명하는 것으로서 은행 등의 금융기관이 채권자인 경우에는 적당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매각명령에 의한 집행방법 또는 관리명령에 의한 집행방법이 지식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방법으로 고려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먼저 매각명령에 의한 강제집행방법은, 압류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의 추심에 갈음하여 압류된 지식재산권을 집행법원이 정하는 방법으로 집행관에게 매각하도록 하는 절차인데, 법원 소속 집행관의 경우 당해 지식재산권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적절한 매각방법을 알 수 없을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도 기술이전촉진법 제6조에서 기술거래의 전문기관인 “한국기술거래소”를 이용하여 매각하도록 함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한국기술거래소”는 기술이전촉진법 제6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상설 기술거래시장을 개설과 운영을 주된 업무의 하나로 하고 있고, 부설 국가기술은행은 기술평가와 기술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기술시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집행법원은 물론이고 채권자나 채무자도 그 매각결과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한국기술거래소는 2000년부터 2005년말까지 기술거래 284건, 기술평가 627건, 투자알선 42건, M&A컨설팅 48건 포함 1,001건의 실적을 달성하였는데, 국내 기술거래시장의 미성숙 사정을 고려하면 상당한 성과에 이른다라고 보여줍니다. 다만, 국가기술은행의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어 있는 판매희망기술과 구매희망기술을 모두 합한 숫자가 21,000여건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좀더 많은 구매희망기술 및 판매희망기술이 누적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관리명령에 의한 강제집행방법은 현실적으로 자주 이용되지 아니하고 있으나, 본 토론자의 생각에 의하면 지식재산권의 경우 유효한 강제집행방법으로 활용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지식재산권에 관한 유통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 압류된 지식재산권에 대한 적당한 구매자가 적시에 나타나리라는 보장은 없는 것이므로, 지식재산권의 평가, 관리, 처분 등에 대한 전문적인 능력이 있는 관리인을 선임하여 압류된 지식재산권을 관리하고 필요로 하는 기업에 실시권을 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발생시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채권이 모두 회수되는 경우에는 다시 채무자에게 지식재산권을 반환하도록 한다면, 지식재산권의 담보가치 및 회수가능성은 더욱 제고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굳이 민사집행법에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대법원 규칙이나 예규의 형식으로 규정하여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발제자께서 언급하신 지식재산권에 대한 배드뱅크로 하여금 매각명령에 의한 지식재산권을 매수하도록 제도화하거나, 지식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신탁제도나 자산유동화의 방법을 관리명령에 의한 강제집행방법과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한다면, 기술거래의 방식이 단순한 매도인과 매수인의 양자간의 관계로만 설정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 신탁회사, 배드뱅크, 수익자, 매수인 등의 참여로 인하여 더욱 다양해지게 되어 채권회수의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을 것이므로, 지식재산권이나 기술을 담보로 하는 은행의 대출은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V. 결론

부동산 등 물적자산보다는 첨단기술과 기술인력에 대한 투자비중이 높은 중소벤처기업으로서는 은행과 같은 제도금융권으로부터 자금을 유치하는 것이 쉽지 아니한 상황에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하여 ‘포괄적 동산담보제’나 ‘기술신탁’등 여러 가지 제도개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권으로서도 기존의 부동산 담보를 이용한 영업만으로는 필요한 수익률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담보확보수단을 통한 영업을 강화하고 있고, 그 방편으로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활용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업의 지식재산권이나 고가의 장비 등을 활용한 새로운 담보제도나 투자제도가 나오기까지는 여러가지 난점이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기존의 법제도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 토론자로서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담보확보수단으로 기존에 인정되고 있는 질권설정방법에 주목하게 되었고, 은행이 기업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이며 공정한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담보로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에 대한 필요조건으로 기술평가제도를 일원화하고 기술평가기관을 전문화하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방법에 따라 기술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이는 별다른 제도개선 없이도 정부와 관련 기술평가기관의 의지와 노력만 있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2006년 7월경 산업자원부와 특허청이 주도하고 국민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이 참여하여 기술기업에 대한 기술력평가만으로 신용대출을 지원하고 있는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 지원사업’은 그 실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질권의 설정과 관련하여 서로 다른 종류의 지식재산권 사이에서도 공동으로 질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최소한 서로 유사한 법리를 가지고 있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에 대한 등록제도를 통합하여 규정하는 방안, 지식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있어서 기술의 적정한 매각을 위하여 한국기술거래소를 통하여 지식재산권을 매각하는 방안, 그리고, 지식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있어서 관리명령에 의한 집행방법을 활용하되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인을 선임하여 그 처분과 관리 및 수익활동을 맡기는 방안을 검토할 여지가 있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며, 이상 짧은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토론

이 로 문

한국지적재산권법제연구원 책임연구원

지적재산권 담보대출 활성화방안

이 로 문

한국지적재산권법제연구원 책임연구원

I. 지적재산권의 담보활성화에 있어서 문제점

1. 지적재산에 대한 인식부족

지적재산의 담보로서의 활용이 저조한 것은 담보제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지적재산에 대한 부족한 인식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현행 담보제도만으로도 지적재산의 담보화는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이를 반증하는 것이다.

2. 지적재산의 가치평가

지적재산에 대한 담보활용성이 제고되었다 하더라도 지적재산에 가치평가의 문제로 인해 지적재산이 담보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3. 지적재산의 version up과 담보의 추급가능성

새로운 기술의 출현이나 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술이 급격하게 진부해지거나 향상될 수 있다. 지적재산이 version up 되는 경우 이전의 지적재산과 이후의 지적재산을 동일하게 보아야하는지의 문제가 있다. 만일 별개로 보아 이후의 지적재산에 대하여 추급할 수 없다면 사실상 담보로서의 가치가 없게 된다.

4. 사후관리의 어려움

지적재산권에 담보를 설정한 후에도 지적재산이 무효로 될 가능성이 있다. 등록된 권리라 하더라도 이의신청이나 소송 등에 의하여 취소 또는 무효로 될 수

있다. 유체물의 경우에도 멸실의 문제는 발생할 수 있지만 유체물에 질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하기 때문에 지적재산권의 소멸과는 다른 문제이다.

5. 법률적 보호의 미흡

지적재산에 대하여 법적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적재산을 담보로 활용하는 것도 꺼릴 수밖에 없다. 모방이나 도용 등에 대해 비교적 관대한 태도를 취하거나 구제수단이 미약한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II. 현행 지적재산 담보제로서의 질권과 양도담보에 대한 평가

1. 질권에 대한 평가

지적재산권에 대한 담보방법으로 질권보다는 양도담보를 더 선호하고 있다는 몇 가지 이유로 다음과 같은 것을 들고 있다.

첫째, 질권자는 계약에서 정함이 없는 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다. 둘째, 질권설정 후라도 특허권자는 질권자의 허락없이도 전용실시권이나 통상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셋째, 양도담보에 비하여 권리설정 절차가 엄격하다. 넷째, 등록 수수료가 적지 않은 반면 권리행사방법이 매우 제한되어 있다.

2. 양도담보에 대한 평가

양도담보를 설정하는 이유는 대부분 담보권자가 특허권을 보유하여 특허를 실시하거나 실시권을 제3자 등에게 허여할 목적으로 담보대출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지만 유통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면 큰 실익이 없다. 양도담보의 경우 특허료 등 지적재산권의 유지관리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 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특허권자의 변경원인이 등록원부상에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특허권자가 마치 특허권을 완전히 양도해버렸다고 오해할 우려가 있다. 마지막으로 양도담보의 경우 채권자에 등록원부상 소유권이 이전되기 때문에 채무자인 원특허권자는 담보권자로부터 지적재산권의 이용허락계약과 실시권의 설정이 필요하게 된다. 이 경우에는 전용실시권 등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실시권을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Ⅲ. 지적재산권 담보활성화를 위한 제언

특례법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긍정적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실체법적 측면과 절차법적 측면을 규정하는 방향은 대체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지적재산권에 대한 담보설정 및 강제집행절차 등에 대한 특례 등을 인정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1. 실체법적 측면

동산담보 및 채권양도특례규정과 더불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지적재산권에 대하여 민법상 인정되고 있는 질권을 설정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나 비효율성 측면을 고려하여 특례를 인정하도록 하는 규정 또는 관습법상 인정되는 양도담보에 대한 보충규정을 두도록 하는 것이다. 양도담보가 관습적으로 인정되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질권보다는 양도담보가 더 많이 이용되거나 더 많이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바 양도담보설정에서 지적되는 현행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규정함으로써 지적재산에 대한 담보활성화를 꾀해볼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지적재산에 대한가치평가에 대한 기준 규정도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실체법적 규정에는 특허를 받을 권리도 특허출원 후에는 질권설정을 가능하게 하도록 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 공시방법이 문제될 수 있으나 특허청의 출원번호가 기재장부를 공시방법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지적재산 하나하나에 담보를 설정하는 것보다 제품과 연관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노하우 등 관련기술을 일괄하는 담보제도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2. 절차법적 측면

지적재산에 설정된 담보권을 실행하는 절차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상 특례규정을 두도록 하는 것이다.



토론

최정현

기술보증기금 팀장, 법학박사

은행의 지재권 담보대출 활성화방안

최정현

기술보증기금 팀장, 법학박사

□ 도입 배경

- 담보여력이 미흡한 중소기업 육성 및 활성화가 필요
-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부동산 담보대출 의존 경감
 - 새로운 담보수단을 확보
- 신BIS 대응

□ 제시 방안

- 지재권 담보활용 방안
- 매출채권 양도 방안
- 기계·기구 등의 동산을 RFID를 활용하여 효율적인 담보관리 및 운용 방안

□ 지재권보유의 중요성

- 지식기반 경제 → 지재권의 중요성
 - 특허분쟁이 심화
- 기업의 기술력을 평가할 때 지재권 보유현황이 중요하게 영향을 미침
- 기술개발 결과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의 하나

□ 지재권 담보활용의 어려움

- 합리적인 가치산정이 어려움
 - 기술의 수익추정기간이 짧아지고 있음

- 현재 기술가치평가기법
 - 사업주체에 따라 기술가치금액이 달라짐
- 시장에서의 신뢰도가 낮음
 - 담보 활용 및 처분에 어려움
- 기존 금융관행 탈피에 어려움
- 기술평가 수수료가 부담
- 기술평가에 오랜 기간 소요

□ RFID를 활용한 동산의 담보화 방안

- 담보 관리의 용이함
- 담보로써 가치가 어느 정도 현실적임
- RFID 관련 인프라 구축에 많은 비용과 시간
- 체계적인 관리의 문제점 여전히 존재
 - 최근 장비가 고도화되고 있으며, 고가의 장비들의 경우 외형보다 핵심 내부장치가 훨씬 중요함

□ 지재권 담보활용 활성화 조건

- 평가기법 개발 및 전문가 육성이 과제
 - 산자부 산기반사업 “기술평가기법 개발 및 보급사업” 추진
- 동기부여를 통해서 적정기간 동안 많은 사례 구축이 필요
 - 정부차원에서의 손실보전조치 필요

□ 특허기술가치평가 연계 보증제도 (기보의 사례)

- 사업화이전단계의 우수한 기술을 조기에 발굴하고 사업화를 촉진하고자하는 목표로 '05.12월 특허청(발명진흥회)과 업무협약
- 평가수수료 7백만원 중 5백만원을 특허청에서 보조(2백만원 기업부담)
- 기존보증에 관계없이 같은기업당 10억원 한도

- 기술가치금액 범위내에서 기술평가등급에 따라 차등지원
 - 기술평가등급 AAA~AA : 기술가치금액 이내
 - 기술평가등급 A~BBB : 기술가치금액의 1/2이내
 - 기술평가등급 BB~CCC : 기술가치금액의 1/3이내

- 10월말까지 실적 : 54건 142억원 지원
 - ※ 2005년 기보의 기술평가보증공급액 18,829억원

- 운용상의 검토내용
 - 평가수수료 2백만원이 부담(최근에 낮춤)
 - ※ 기술평가보증 평가료 20~100만원
 - 평가기간 2개월정도로 장기
 - ※ 기술평가보증 평균 2~3주
 - 기술가치금액이 기업이 원하는 보증금액에 미달
 - 기업의 준비서류가 과다